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해녀공동체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노 우 정

2021년 2월

제주 해녀공동체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지도교수 양 정 필

노 우 정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노우정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Jeju Sea
and the Role of Jeju Haenyeo's Community

NOH WOO-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EONG-PI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1. 2.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 |
|---------------------------|----|
| I. 서론 | 1 |
| 1. 연구 목적 | 1 |
| 2.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 4 |
| II. 해녀공동체의 존립 기반 | 6 |
| 1. 경제적 기반 : 물질의 수익성 | 6 |
| 2. 법·제도적 기반 : 어업권과 해녀회 | 13 |
| 3. 공간적 기반 : 마을어장 | 20 |
| III. 어장 황폐화 위기와 해녀공동체의 대응 | 31 |
| 1. 잠수기선에 대한 비타협적 대응 | 31 |
| 2. 고무옷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 | 38 |
| 3. 자율적 생산 통제로써 금채 | 43 |
| IV. 해녀공동체와 마을어장의 지속가능한 관리 | 52 |
| V. 결론 | 65 |
| 참고 문헌 | 69 |

<표 목차>

| | |
|---------------------------------------|----|
| [표 1] 연도별 해녀수 변동 | 8 |
| [표 2] 연령대별 해녀 구성 현황 (2019년 기준) | 9 |
| [표 3] 품목별 생산실적 | 11 |
| [표 4] 수산업협동조합 운영 실태 (일반현황) | 16 |
| [표 5] 어촌계 가입절차 흐름도 | 17 |
| [표 6] 수산업 관련 법령의 주요 변천 | 22 |
| [표 7] 마을 간의 어장구역 분쟁 | 24 |
| [표 8]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 47 |
| [표 9] 제주도 소라 연간(1986-1995) 어획량 | 48 |
| [표 10] 제주 해녀공동체의 자원관리 양상 | 61 |

Abstract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Jeju Sea and the Role of Jeju Haenyeo's Community

Jeju Island is a volcanic island located in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women with occupations named 'Haenyeo' in Jeju Island. Haenyeo are women divers collecting seashells or seaweeds as their occupation in Jeju island's coastal water. Haenyeo is a unique profession that has been existed around for hundreds of years in Korean history. Using a very simple tool, they make a living and earn money through the underwater harvesting sea foods. Haenyeo are well known for their uniqueness of underwater work called Muljil, community with strong solidarity, and their efforts to maintain the ecosystem of coastal water. Haenyeo's value were certifi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in 2016. This thesis explores how the activities of Jeju Island's women divers have helped maintaining the health of the Jeju island's coastal ecosystem.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Haenyeo were able to survive in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First of all, the Haenyeo's products has exchangeable value even in a capitalist society. It serves as the basis for their economic independence and a source of pride. Also, for Haenyeo, the sea is not just a working place. They call the coastal water as "Badangbat(maritime garden)" and they care for their Village fishing ground(maeul-eojang). Like Terrestrial ploughland, Haenyeo cultivate and care for the coastal water and its seashells and seaweed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to Haenyeo's existence is the long-standing Haenyeo community itself. The strong but caring community connected

by sisterhood became the basis for their joint activities.

Due to these conditions, Jeju Island's Haenyeo are able to create a amazing balance between their occupational products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When a new technology were introduced, Haenyeo first considered whether it would lead to excessive harvesting and resource exhaustion or not. No matter how high the efficiency is, they clearly expressed opposition to technologies that lead to resource exhaustion. At the same time, they did the best they could to ensure that the ecological abundance of the sea continues. Harvesting was banned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a creatures's growth. Haenyeo cleaned their Badangbat(maritime garden) regularly so that the sea resources they wanted could grow in a best conditions. As a result of such efforts, Jeju Island has a world famous clean sea.

This thesis also focuses on the existence of the Haenyeo's community. The common resources in the sea around Jeju Island remain capable of continuous production beyond the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anks to the efforts of Haenyeo's community. They voluntarily controlled the total amount of sea products through democratic decisions. It can be said that Haenyeo's community has very futuristic aspects. We are living in a time of climate change. And it is a time when human survival itself becomes an urgent problem. I believe that this thesis on Jeju Haenyeo's maritime work and their community can give a little inspiration in such an era of upheaval.

I. 서론

1. 연구 목적

해녀의 물질이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¹⁾²⁾ 차가운 바닷물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고무옷, 물속에서 시야를 확보해주는 물안경, 이동의 편의를 더해주는 오리발과 같은 도구들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이에 반해 전통적 채취 도구들이면서 여전히 물질에 사용되는 테왁, 망사리, 빗창 등은 그 기원이 적어도 조선 중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³⁾ 숨을 참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생태적 지식을 동원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공기통을 비롯한 스킨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되는 현대의 장비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해녀물질 기술의 본질적 측면이 변화가 적었던 것과는 달리 해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했다. 개항과 더불어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제주도민, 그리고 해녀들에게는 봉건세력이 아닌 외세에 의한 또 다른 수탈의 시작이라는 측면과 함께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제한적이거나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했다. 근대 이후 해녀의 물질은 자본주의 상품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가깝게는 남해안의 바다로부터 멀게는 중국과 러시아의 바

- 1) 잠녀(潛女) 혹은 잠수(潛嫂)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우는 해녀(海女)는 특별한 장치 없이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나잠어법(裸潛漁法)으로 제1종 공동어장인 수심 10m 내외의 얇은 바다에서 소라·전복·미역·톳·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하며, 가끔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여성들을 말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2) 제주 해녀들이 하는 작업은 「수산업법 제2장 제12조 7항」에 “나잠으로 하는 해저 어업”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해녀와 관련하여 “나잠업자로, 기계 장치 없이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일하는 여성 잠수업자들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곧, 해녀들의 ‘물질(자맥질)’이란, 주로 산소 공급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일컫고, 영어로는 ‘plaining diving’이라고 한다(좌혜경, 『제주 해녀』, 대원사, 2015, 37쪽).
- 3) 테왁은 부력을 이용한 작업도구로서 해녀들이 그 위에 가슴을 얹고 작업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한다. 테왁에는 망사리가 부착되어 있어 채취한 수산물을 넣어둔다. 빗창은 전복을 떼어내는 데 쓰이는 철제 도구이다(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 해녀소개 발췌).

다로 출가물질을 나갔던 것은 해녀물질의 생산성이 이동과 일시적 정착, 어장 이용료 등의 비용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⁴⁾

해녀들이 맞닥뜨린 그러한 변화는 내부적인 변화의 필요성 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19세기 후반의 개항 자체가 외세의 침탈에 의해서였을 뿐 아니라 개항 이전의 오랜 시간동안 봉건적 의무관계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해녀들의 화폐경제로의 적응은 놀라울 정도로 발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해녀공동체의 선택은 동료들과의 자본주의적 무한경쟁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로부터의 협력과 연대였다는 점이다. 제주의 해녀들은 제주의 남성 어부들이 그러했듯 새롭게 도입된 기술을 갖고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물질의 생산성을 높여줄 신기술이 도입될 때 해녀들이 선택한 것은 개인별 능력주의와 그에 따른 생산성의 극대화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생산의 자발적 억제였다. 해녀 물질의 영역이 제주라는 섬으로 축소되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경계가 뚜렷이 설정된 마을어장을 발농사와 다름없이 가꾸고 살피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립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살아있는 제주의 여성이며, 그들이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제주 바다의 풍요로운 생태계이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해녀공동체가 자리잡고 있다. 해녀공동체는 봉건적 위계 질서가 아니라 언니-동생으로 이어지는 수평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위계가 있는 자매애로 결속된 공동체이다. 지시와 통제가 아닌 상호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민주적으로 구성원들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⁵⁾ 해녀들은 개항을 전후한 시기, 일본의 제주 해양자원 수탈로 인해 발생한 어장 황폐화가 바다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고 축적된 생태적 지식은 해녀들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관리'를

4) '출가(出稼)'란 말은 해녀 자신들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물질하는 것을 말함인데, 곧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나가 작업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좌혜경, 앞의 책, 2015, 66쪽).

5) 조선중기 이후 시행된 '출륙금지령'의 영향에 따라 혼인에 따른 혈족의 범위가 마을 단위로 매우 좁은 편이고 이른바 '곶당'문화가 있는 것을 보면 제주의 마을 구성원들은 일정정도의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제주의 해녀공동체는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을 이어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제주의 바다에서 유지해올 수 있었다.

2020년 초부터 인류 전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감염병, 코로나19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발생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설득력있는 추정에 따르면 박쥐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열대의 숲속에서 살던 박쥐가 밀림까지 뻗쳐온 개발의 손길로 인해 인간과의 접촉면이 생기면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개발의 확산이 박쥐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이 상황이야말로 인간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오히려 절실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제주 해녀공동체가 특유의 결속력을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지해 온 과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 해녀공동체는 자신들의 산출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생태적 안정성을 지켜가면서 스스로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한지를 알고 있다. 제주의 해녀공동체에는 개개인의 이기심을 제어하는 것이 실제로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원칙, 하지만 자본주의 근대화의 전 과정을 통해 무시되어 온 소중한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근대 사회 혹은 저개발 지역의 특수한 사례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해녀공동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훌륭하게 적응을 하면서도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공동체의 결속력을 여전히 유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오늘날, 제주 해녀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해녀공동체는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수시로 진행되어온 법과 제도의 변화를 공동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실천했다. 무엇보다도 제주 바다의 생태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물질이 일회적이며 약탈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해왔다. 제주의 해녀공동체는

바다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구획짓도록 하는 법률의 변화에 대응해 마을어장의 효율적 관리로 대안을 마련했다. 신기술의 도입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더 나아가 지속적인 수익의 창출과 병립하기 힘들다고 여겨질 때는 신기술의 도입을 거부하거나 제한했다. 한편으로 신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자체 규약을 통해 그리고 상호간의 선의를 믿는 호혜적인 감시를 통해 생산 자체를 집단 내부에서 조절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제주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많은 부분 해녀들에게 빚지고 있다. 그것이 적극적 환경운동가가 아닌 바다에서 수익을 얻는 것에서 생계 해결이 시작되는 평범한 생활인, 제주 해녀라는 존재로부터 만들어져온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본고는 평균적 이기심을 가진 보통의 생활인으로서의 제주 해녀가 지속가능한 생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다 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생태주의적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녀들 특유의 유대감이 강한 공동체의 존재와 내부로부터의 자발적인 협력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어장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해녀물질의 해양 생태계 친화성과 해녀공동체의 특징적 양상들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최근들어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제주해녀 연구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는 해녀물질의 특성, 해녀공동체의 작동원리, 해녀와 물질의 역사적 근원 등에 대한 기존연구가 선행되어 있어서 가능한 작업이다.

물질 기술과 민속신앙과 같은 해녀문화에 대한 기초자료는 김영돈(1999)이 해녀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을 통해 세밀한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박찬식(2004)의 경우에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해녀사를 개관했는데, 신분과 관련한 제도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의 측면에 집중하여 해녀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해녀공동체의 특성들이 오래전에 형성된 이후 고정된 양상으로 전래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역

사적 형성물의 하나이며 수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민윤숙(2010, 2012)은 제주 지역 해녀공동체의 물질현장에서 적정선의 수확물을 결정하는 메카니즘을 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추가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녀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체 작동원리를 분석했다.⁶⁾⁷⁾ 안미정(2007)의 경우에는 김녕지역 해녀사회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진행한 해녀공동체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해녀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⁸⁾

본고는 선행연구자들의 미시적 관찰과 거시적 통찰을 통합하여 제주 해녀의 공동체적 특성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과정과 결과를 살피고자 한다. 외부환경의 변화가 제주의 해녀공동체에 충분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만한 상황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해법을 찾아냈고, 그것이 해녀들이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지라도 생태주의에 가까운 양상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이론적인 학습과 의식화가 선행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용한 인터뷰의 상당 부분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2017년부터 발간사업을 진행해온 『제주어구술자료집』에 크게 힘입었다. 해당 자료집은 2017년 제 1권 제주시 도련1동 편을 시작으로 2019년 제 28권 구엄리 편까지 총 28권이 발간되었다. 일부 중산간 마을을 제외하면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상, 특히 어로활동이나 해녀물질에 관련한 유용한 구술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자료집은 대상이 해녀들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주지역 각 마을 일반주민들의 인터뷰도 포함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해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볼 기회가 되기도 했다. 구술된 제주어와 표준어 번역이 동시에 제공되어 연구의 편의를 더한 것도 『제주어구술자료집』의 인터뷰를 인용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고의 한계도 존재한다. 제주 바다생태계의 특성과 변화양상에 해녀들의 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계량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면으로 연구가 수행된다면 제주 해녀공동체가 바다생태계와 상호작용하

6) 민윤숙, 「제주 잠수 물질의 생태학적 측면: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물질’ 민속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85-136쪽.

7) 민윤숙, 「제주 잠수공동체의 공생, 공존 전략」, 『한국민속학』 55, 한국민속학회, 2012, 7-50쪽.

8)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는 양상과 공동체적 결속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추구의 효용성이 더욱 분명히 규명되리라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마을어장에 대한 생태적 고려라는 것이 제주해녀가 갖고있는 보편적 특성으로 발현되고는 있으나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구현되는 양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별, 마을별 사례연구가 왕성히 진행된다면 제주해녀와 바다생태계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I. 제주 해녀공동체의 존립 기반

1. 경제적 기반 : 물질의 수익성

해녀(海女)는 일본에서 온 말이다. 일본에서 해녀를 한자로 표기하고 읽을 때 ‘아마’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이후 ‘해녀’라는 용어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⁹⁾ 옛 문헌에는 잠녀(潛女), 혹은 잠수(潛嫂)라는 명칭이 주로 보인다. 여전히 해녀들 사이에서는 잠수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한다. 제주에서 해녀라는 직업의 전승은 어머니로부터 딸이나 며느리로 이어져왔다. 조선시대 중반 무렵만 해도 ‘포작’이라고 하여 해녀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남성들의 집단도 있었으나 점차 여성으로 대체되었다.

해녀는 물질에만 전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물질은 일년 중 영등철이라 하여 바다의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간과 한 달 중에서도 조류가 세게 흐르는 ‘사리’ 전후처럼 물질작업이 곤란한 시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¹⁰⁾ 물질만큼이나 육상에서의 농경활동도 해녀들의 주요한 생업이다. 따라서

9) 제주도에서는 물질을 하는 여자를 ‘잠수’라고 부르는데 총독부가 ‘海女’라는 말을 도입했기 때문에 식민지 문서에도 ‘海女’라고 기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녀=海女’라는 말이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海女’는 ‘식민지어’라 해서 의식적으로 ‘잠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지치 노리코, 『日本人學者가 본 제주인의 삶』, 경인문화사, 2013, 125쪽.).

10) 매년 음력 2월은 영등달로, 2월 초하루 영신제를 지내고 2월 14일 송신제를 지낸다. 이 기간에는 바다에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

물질은 전적인 생업의 기반은 아니고 농경활동 중간중간 여성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딸 낳으면 돼지 잡아서 잔치하고 아들을 낳으면 밭길로 궁둥이를 짝 찬다'는 속담처럼 제주사회에서는 여성노동력, 특히 농경과 어로에 두루 종사할 수 있는 해녀의 가치가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고, 따라서 어머니가 해녀인 경우 딸 또한 해녀로 물질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무슨 한 열 몇 살에부터 배웠지. 난 아주 어린 때도 몸이 약하니까 어머니보고 난 물 시리니까, 그땐 고무옷도 없는 때고...(중략)...헤엄 배우라고 해서 가면 '속곳' 입고 추워서 이렇게 '테약' 들고 서면 우리 어머니 물로 와락하게 밀어 버렸어.¹¹⁾

한겨울에도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해야하는 해녀의 노동은 그 자체로 고역이다. 자식 세대만큼은 해녀의 고된 노동에서 배제시키고자 했던 의지와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해녀라는 직업 자체의 소멸을 걱정할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제주도에에는 제주시 56개와 서귀포시에 46개의 어촌계를 합쳐서 모두 102곳의 어촌계가 있다.¹²⁾¹³⁾ 해녀들은 의무적으로 102곳의 어촌계 중 하나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구좌읍 하도리처럼 300명 가까운 해녀들이 활동하는 곳도 있지만, 신임어촌계의 경우에는 6명, 구임어촌계의 경우에는 8명, 가장 적은 수가 있는 내도어촌계의 경우처럼 4명의 해녀만 활동하는 어촌계도 있다. 물질이 가능한 해녀의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11)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26.한경면 신창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9. 116쪽.

12)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해양수산업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20, 130쪽.

13) 2016년 1월 21일 서귀포시 대천동에 있는 월평마을에서 월평어촌계 설립승인을 인가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102곳의 어촌계가 있는 것으로 집계한다. 하지만 월평마을에는 마을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월평어촌계는 현재 서귀포수협에 속해있지 않고, 마을어장이 없는 관계로 마을어장과 관련된 행정의 각종 정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 통계에서는 101곳의 어촌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월평마을이 1975년 수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마을어장 어업권이 수협에서 어촌계로 이양되던 시기에 어촌계를 만들지 않았고 따라서 마을인근 바다의 어업권은 현재 강정어촌계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월평어촌계는 2014년부터 법원에 어촌계 설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어촌계의 설립에 마을어장과 어업권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강정어촌계가 갖고있는 마을어장 어업권이 갱신되는 2024년에 협의를 통해 마을어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물질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늙어서 돌아가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물질을 배우지를 아니해 놓으니까, 그걸 이제 박하고 뭐 하니까 하려고 안 해.¹⁴⁾

여성의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몸을 사용하는 고된 일을 꺼리는 사회분위기의 탓도 있지만 의외로 높은 해녀사회의 진입장벽 또한 해녀 숫자 감소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2곳의 해녀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신규 해녀의 산실 역할은 요원하기만 하다. 어촌계와 해녀회(잠수회)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신규 해녀의 증가세는 매우 완만한 반면, 고령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해녀의 자연감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연도별 해녀수 변동]

| 연 도 | 1970년 | 1980년 |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19년 |
|-------------------------------|--------|-------|-------|-------|-------|-------|
| 해녀수(명) | 14,143 | 7,804 | 6,827 | 5,789 | 4,995 | 3,820 |
| 【출처 :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해녀관련 통계 게재】 | | | | | | |

제주의 해녀 숫자는 1965년의 23,081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1970년에 14,143명, 10년 뒤인 1980년에는 7,804명으로 매우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다.¹⁵⁾ 당시의 급격한 해녀 숫자 감소는 해녀의 주 수입원이던 미역의 채취가 육지의 미역양식 성공으로 인해 환금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편으로는 그 무렵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에 인력수요가 늘어난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여겨진다. 1990년대 이후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해녀의 진입이 제한되면서 매년 해녀의 연령별 구성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져가고 있다.

14)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28.애월읍 구엄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9. 315쪽.

15)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49쪽.

[표 2. 연령대별 해녀 구성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명)

| 구 분 | 계 | 30세미만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80세 | 80세이상 |
|-------|-------|-------|--------|--------|--------|--------|--------|-------|
| 계 | 3,820 | 6 | 27 | 56 | 322 | 1,174 | 1,614 | 621 |
| 제 주 시 | 2,241 | - | 9 | 29 | 226 | 692 | 868 | 417 |
| 서귀포시 | 1,579 | 6 | 18 | 27 | 96 | 482 | 746 | 204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자료 2020년 6월 24일 홈페이지 게재】

해녀 고령화의 단면 중 하나는 매년 물질을 하다가 각종 사고를 당하는 해녀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사고를 당한 해녀는 모두 64명으로, 사고의 원인은 심정지 24명, 낙상 15명, 익수 7명, 가슴 통증 8명, 뇌졸중이나 호흡곤란 각 3명, 기타 4명이다.¹⁶⁾ 사망에 이른 경우만 봐도 2017년 12명, 2018년 5명, 2019년 7명 등 모두 24명인데, 이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해녀는 19명이나 됐다. 수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해녀들이 물질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해녀의 물질로 인한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맞아 제주도 행정당국에서는 ‘소득보전제도’나 ‘은퇴해녀제도’와 같은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고령해녀 소득보전수당이라고 해서 고령해녀의 물질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0대 이상 해녀에게 월 20만원, 70대 해녀에게 월 10만원이 은퇴할 때까지 지급된다.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80세 이상의 은퇴 해녀에게 3년 동안 월 30만원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한림읍 귀덕2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해녀조차 행정의 수당보다는 물질 자체를 훨씬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6)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2020.4.6., <<http://www.jeju.go.kr/119/promote/news.htm?page=5&act=view&seq=1238406>>(접속일: 2020.10.30.).

‘팔십 넘은 노인은 한달에 삼십만원 줄테니까 물질을 하지마세요’라고 (어촌)계장님이 발표를 했는데도 팔십여섯(86)난 사람도 물질하겠다고 해. 안하겠다고 안해. 17)

나이가 들어도 노동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제주사회의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각각의 해녀들이 어촌계의 협동작업이나 개별적 물질작업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금액의 측면에서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제주 해녀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 최고에 이르는데 당해 연도에 총 368억 6천 6백만원의 어업소득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¹⁸⁾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채취하는 수산물은 대다수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충분한 수익성이 예상되는 수산물이라면 양식의 개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인데 해녀들이 채취하는 수산물은 양식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산’에 대한 선호도 존재한다. 전복이나 미역의 경우 현재 양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녀들이 채취한 것이라면 가격이 더 높게 매겨지게 된다. 이러한 ‘자연산’ 선호에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형성된 미식취향도 큰 몫을 했다.

해녀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채취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내 소비층이 선호하거나, 군수용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했던 품목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군수산업에 필수라는 이유로 우뭇가사리와 감태의 채취가 급증한 바 있다.¹⁹⁾ 육지에서 미역의 양식이 성공하기 전인 1960년대에는 제주도 미역이 최고로 취급되어 주요 생산물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들의 물질 대상 역시도 시장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채취한 수산물은 생산과정에서 비용이 매우 적게 소요되

17)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구술조사 전사(한림읍 귀덕리-2)”, 제주학연구센터, 2019. <<http://www.jst.re.kr/jejustudiesDetail.do?cid=040100&mid=RC00091192>>(검색일: 2020.9.20.).

18) 고창훈, 「제주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계승」,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대한토목학회, 2005, 3282쪽.

19) 감태에 들어있는 요오드 칼륨은 진통·소염제를 만드는 원료이자 화약을 만드는데 쓰였고, 우뭇가사리는 실이 영키지 않게 하고 염료 정착에도 도움이 되어 섬유업의 중요한 재료였다.

기 때문에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현재에도 1차 산업 생산물의 수출비중이 높은 제주도에서 수출품목의 상당량이 해녀들이 생산한 품목이라는 점,²⁰⁾ 제주도 총 수출액의 최하 31%(1988)에서 최고 79%(1991)를 해녀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 충당해왔다는 점을 보면 제주 지역경제에 해녀의 기여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²¹⁾ 다음의 [표 3]을 보면 2019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해녀들이 중심이 되는 마을어업을 통해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품목별 생산실적]²²⁾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전년대비(%)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계 | 4,106 | 24,416 | 4,892 | 24,645 | 4,896 | 25,441 | 5,043 | 27,046 | 4,350 | 23,228 | 3,496 | 19,990 | △19.6 | △14 |
| 소라 | 1,971 | 8,206 | 2,295 | 9,899 | 1,896 | 8,168 | 2,684 | 10,705 | 2,010 | 7,054 | 1,706 | 6,007 | △15.1 | △14.8 |
| 전복 | 9.6 | 1,325 | 8 | 842 | 7 | 488 | 5 | 474 | 2 | 195 | 3 | 333 | 50.0 | 70.7 |
| 오분지기 | 8.9 | 544 | 4 | 240 | 4 | 211 | 5 | 305 | 1 | 67 | 3 | 156 | 200.0 | 132.0 |
| 성게 | 123 | 6,190 | 66 | 3,826 | 84 | 5,606 | 69 | 4,530 | 559 | 4,906 | 663 | 4,556 | 18.6 | △7 |
| 해삼 | 70 | 1,327 | 108 | 1,976 | 107 | 1,824 | 106 | 1,762 | 100 | 1,691 | 57 | 950 | △43.0 | △43.8 |
| 툇(건초) | 305 | 705 | 395 | 761 | 276 | 560 | 731 | 1,256 | 356 | 681 | 210 | 380 | △41.0 | △44.1 |
| 우뭇가시(건초) | 662 | 2,254 | 614 | 2,818 | 568 | 3,009 | 995 | 5,530 | 1,023 | 6,924 | 586 | 5,889 | △42.7 | △14.9 |
| 김태(건초) | 446 | 808 | 104 | 143 | 286 | 467 | 137 | 263 | 117 | 267 | 78 | 221 | △33.3 | △17.2 |
| 기타 | 551 | 3,057 | 1,298 | 4,140 | 1,668 | 5,108 | 311 | 2,221 | 182 | 1,443 | 190 | 1,498 | 4.3 | 3.8 |

※ 소라 외 품목은 대부분 어촌계 비계통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까지는 성게 알 기준 2018년부터 성게껍질을 포함

20) 최근 몇 년동안 일본간의 분쟁으로 인해 소라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해녀들의 수출소득도 줄어드는 양상이다.

21) 고창훈, 위의 논문, 2005, 3282쪽.

22)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해양수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20, 104쪽.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현직 해녀의 수로 나눠보면 1인당 5백만 원이 넘는다.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의 상당부분이 자가소비나 가족 간의 무상공여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의 규모는 그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 해녀 거의 대다수가 과수원이나 소득작물 등의 농업활동을 겸하고 있으면서 상보적으로 물질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면 해녀의 물질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효용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해녀의 숫자가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역시 해녀의 물질 활동이 노동강도가 강하고 위험도가 높기는 해도 지속적인 수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제주도 행정당국에서 해녀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해녀의 숫자가 어느정도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해녀진료비 지원, 잠수복 지원, 소라가격 보전,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소득보전 수당, 잠수굿과 해녀축제 지원, 종묘 방류 사업 등 2019년에만 해도 68개 사업에 총 2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²³⁾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에는 지원의 규모가 더 늘어난다. 잠수복과 잠수도구(수경, 오리발)는 2년에 한번 제공되었던 것이 등재 이후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눈에 보이는 물품지원 뿐 아니라 해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업이다.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현직 해녀 구분없이 해녀증을 가진 모든 해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진료비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총당하고 있는데, 2019년 지원 액수는 55억 6천 9백만 원이다.²⁴⁾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해녀에 대한 우대정책을 제시하는 것의 부수적인 효과는 해녀들의 위신과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녀가치의 재발견 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녀가 한때나마 스스로를 부끄러운 직업에 종사한다고 여겨왔다는 과거의 기억은 빠르게 잊혀지고 있다.

23) “해녀 어업인들을 위하여 2019년에는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19.6.3., <<https://www.jeju.go.kr/join/evaluation/part9/08.htm?page=2>>(접속일: 2020.10.30.).

24) “2019년도 복권기금 사업안내”, <제주특별자치도>, 2019.11.04., <<https://www.jeju.go.kr/join/evaluation/part9/08.htm?page=1>>(접속일: 2020.10.30.).

해녀의 물질이 지속적인 수익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의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가족 안에서도 해녀들의 발언권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 특히 가사노동은 그것의 절대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상당부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녀의 물질 노동은 자본주의 화폐경제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해녀가 물질을 통해 채취하는 수산물인 공장식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이면서 면적이 제한된 바다 생태계에 고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농업생산물의 경우에는 토지만 확보되면 수익성이 있는 품목의 무제한적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과 대별된다. 더구나 해양생태계에 대해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제주의 연안 바다에 수시로 종패 뿌리기 등이 진행되지만 조석간만의 차이와 조류가 발생하는 탓에 나름의 성과는 있으나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해녀는 수익의 기반인 물질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질의 지속가능성이 침해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법·제도적 기반 : 어업권과 해녀회

제주 해녀는 마을별로 ‘해녀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 해녀회는 ‘잠수회’ 혹은 ‘어촌회’로 불리기도 하는데 해녀회의 제도가 공식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경험이 많은 연장자 혹은 물질기술이 뛰어난 상군 해녀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위계를 가진 해녀 공동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아무리 해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것이 물질작업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해녀회는 마을별로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다. 수산업협동조합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어촌계에 속해있는 조직이다. 어촌계의 인적 구성은 해녀뿐만 아니라 배를 갖고 있는 선주, 선주에게 고용되는 어부, 양식장을 갖고 있는 경영자 등 어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른다. 해녀가 어촌계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주의 특성상 어촌계 내에서도 해녀의 발언권은 작지 않다. 해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육지의 어촌계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어촌계의 하부에 놓이다보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해녀들의 독자성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성들의 발언권이 강한 어촌계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

어촌계가 어촌마을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은 마을어업면허(이하 어업권)를 허가받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어업 관련 법과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해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²⁵⁾ 1911년 <어업령>과 1912년 <어업조합규칙>의 시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어업 관련 법과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는데, <어업령>을 통해서는 마을어업 개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전용어업에 대한 규정을 통해 어촌의 경영과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어업권을 부여할 것임을 밝혔고, <어업조합규칙>에서는 어업권을 어업조합에 부여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다. 어촌의 주민들에게 어업권을 직접 부여하지 않고 어업조합을 통하도록 한 것은 조합설립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일본인들과 친일유지들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수탈을 용이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어업권을 어업조합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1975년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어촌계에 직접 부여할 수 있도록 바뀌기 전까지 유지되었다.²⁶⁾ 어부들과 해녀들은 본인들이 가입한 어업조합으로부터 어업권의 일부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어로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해녀들은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일제강점기 <어업령> 3조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어업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행어업권’이라고 해서 구한말부터 지속되어온 해녀들의 출가물질에도 법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근거가 되었다. 제주도에 처음 설립된 어업조합은 1916년에 설립된 구좌면 어업조합인데, 뒤이어 1920년에는 지역을 기반으

25) 일제강점기 전에도 1908년 11월에 제정되어 1909년에 시행된 <어업법>이 있었다. 하지만 일제가 장악한 통감부를 통해 법의 제정이 이뤄졌고 본문 14개조, 부칙 2개조의 간단한 법률로 전용어업(마을어업)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60년사』, 제주특별자치도, 2006, 117쪽.).

26)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937년 5월에 설립된 조선어업조합이 모태이다. 1944년 4월에 조선수산업회로의 개편을 거쳐, 1949년 한국수산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62년 4월 지금의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책, 2006, 117-120쪽.)

로 하지않고 해녀라는 직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이 설립되면서 해녀들의 어업권을 토대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위탁 판매 독점권을 갖고 활동을 벌어나갔다.²⁷⁾

해방 이후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법, 제도적 변화없이 일제강점기 어업관련 법률 규정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던 것이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어촌계 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어촌계는 처음부터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이었으나 온전한 권리, 의무의 주체로 여겨지는 법인체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업권은 법인격을 가진 수협에 주어지는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었다. 즉 일제강점기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어촌계가 수협으로부터 어업권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마을어장에서의 어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75년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어촌계가 어업권의 최우선 당사자로 지위가 상승되면서 어촌계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현재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법령상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어촌계와 같은 어업권자의 요청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은 실질적으로 20년이 되는 셈이며, 면허 후 20년이 지나면 기존의 어업권은 소멸되며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²⁸⁾ 어업권을 어촌계가 갖고있기 때문에 해녀들은 주기적으로 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계약을 맺고 물질에 나서게 된다. 지역에 따라 3년마다 혹은 10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생산금액의 3%에서 5% 정도를 (어업권)행사로 즉, 입어료의 명목으로 어촌계에 지불하게 되어있다. 어촌계는 이를 마을어장의 유지, 어촌계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²⁹⁾ 현재 제주도에에는 양식수협이라는 업종에 특화된 수협조직을 제외하면 [표 4]와 같이 지역별로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산하에 총

27) 1916년부터 1936년 사이에 제주도에에는 구좌, 추자도, 제주도해녀, 서귀, 제주, 한림, 조천, 애월, 성산의 총 9개 어업조합이 있었다. 1936년 12월에 추자도 어업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조합들이 합병되어 <제주도 어업조합>을 설립하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책, 2006, 117-118쪽.).

28)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의 이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2018, 178쪽.

29) 대정읍 하모리의 경우 같은 책 56쪽에 있는 하모리어촌계와 잠수회 사이의 행사계약서를 보면 기간은 3년이고 금액은 수산물 생산액의 3%로 되어있고, 구좌읍 온평리의 경우에는 어업권 행사 기간은 10년, 금액은 수산물 생산액의 5%로 되어있다. 지역마다 기간과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특별자치도, 2009, 376쪽.)

102개의 어촌계가 소속되어 있다.

[표 4. 수산업협동조합 운영 실태 (일반현황)]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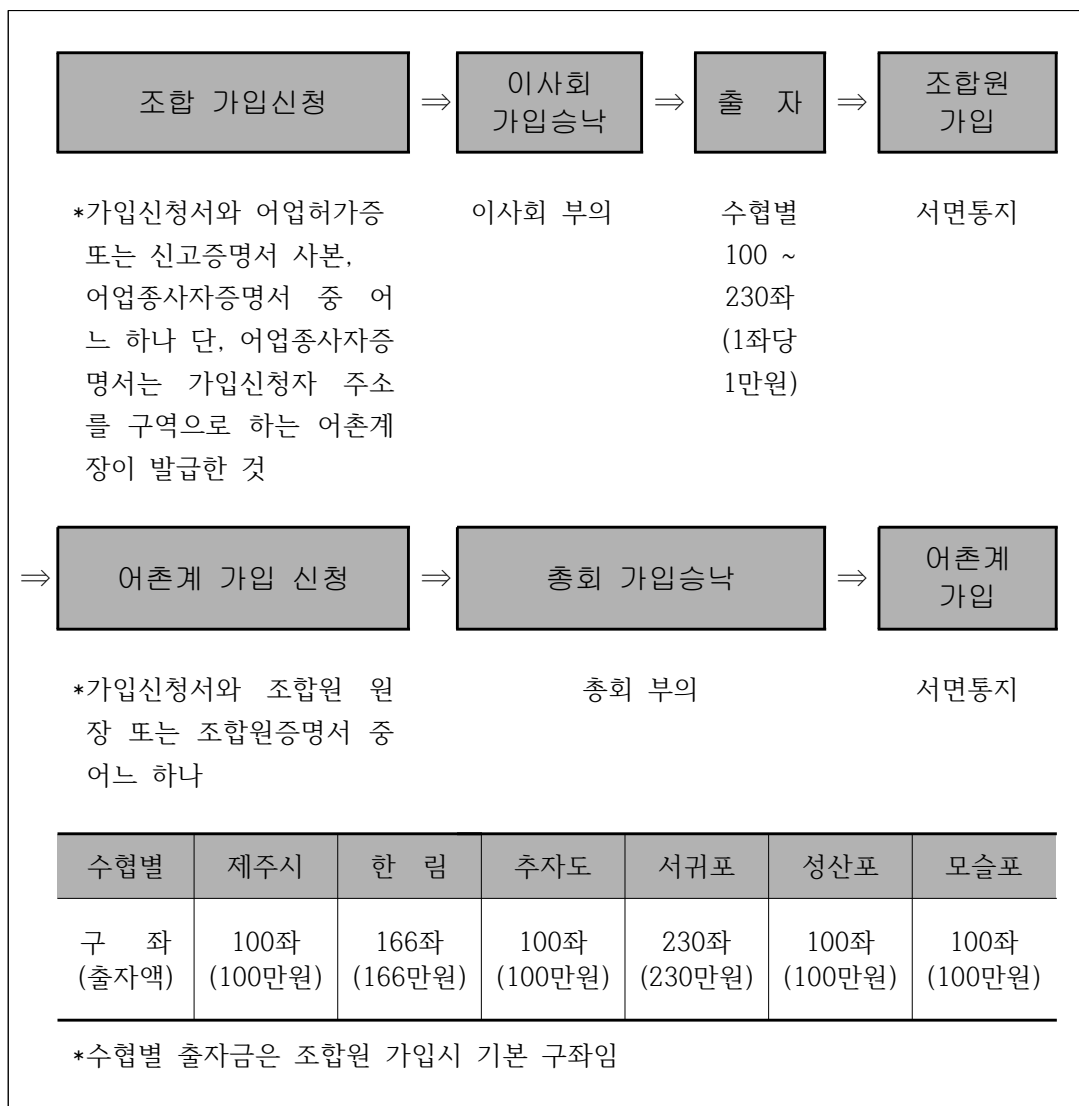
(2019.12.31. 현재)

| 구 분 | 계 | 제주시 수 협 | 서귀포 수 협 | 한림 수협 | 추자도 수 협 | 성산포 수 협 | 모슬포 수 협 | 양식 수협 |
|-------|--------|---------|---------|-------|---------|---------|---------|-------|
| 조합원 수 | 14,039 | 4,701 | 1,992 | 2,367 | 350 | 2,766 | 1,426 | 437 |
| 어촌계 수 | 102 | 33 | 20 | 18 | 5 | 13 | 13 | 0 |

해녀가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어촌계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촌계 가입에 앞서 일차적으로 수협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수협 가입은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어업종사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의 어촌계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협에 가입신청서와 조합비를 내면 이루어진다. 여기서 어촌계장의 역할은 직접 거주 여부의 확인과 실제 어업활동에 종사하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협에 가입이 허가된 다음의 단계가 어촌계 가입이다. 어촌계의 가입과 해녀회의 가입은 허가를 내리는 인적구성이 어업이나 물질에 종사하는 해당 마을의 주민들로 중복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녀회 가입은 관례상 기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다.

30)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해양수산업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20, 130쪽 표 재가공.

[표 5. 어촌계 가입절차 흐름도]³¹⁾



해녀의 물질작업은 말 그대로 ‘철성판을 지고 바다에 뛰어드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물질작업 자체가 생과 死의 기로를 오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새롭게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동료가 바다 속에서 바위틈이나 그물 등에 걸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만한 물질기술을 갖고 있는지, 각종 마을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과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판단의 요소로 작용한다. 해녀공동체의 신규 구성원 가입의 승인여부는 철저히 공동체에 이

31)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의 이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2018, 212쪽.

익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녀공동체 기존 구성원 전체가 판단한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형성된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 결정이 이루어진다. 혹은 결혼을 통해 기존 해녀공동체 구성원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경우처럼 향후의 관계가 예측가능하고 추후 신뢰형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해녀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마을의 해녀들과 지속적 신뢰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신규 해녀의 가입이 기존 구성원들의 물질 기득권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점도 작용한다.

가입과 동시에 어촌계와 해녀회가 보유한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 참여도 보장받는다.³²⁾ 따라서 가입의 조건 중 하나가 어촌계와 해녀회에 가입비를 내는 것이다.³³⁾ 이러한 복잡한 과정과 비용지출을 거치고 나서야 해녀가 될 수 있고 해녀공동체의 일원으로 물질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권이 어촌계에 주어지기 때문에 어촌계와 해녀회에 각각의 가입절차가 필요하기는 해도 실제 마을 현장에서 보면 어촌계와 해녀회는 위계에 따라 별개의 논리로 일처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두 단체 모두 인적구성 자체가 해당 마을의 주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남편은 어부로 아내는 해녀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않고, 마을에 따라 어촌계장과 해녀회장을 겸직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해녀 물질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어촌계장도 해녀회장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간혹 언론보도를 통해 해녀로 등록을 해놓고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 물질에는 참여하지 않는 ‘가짜해녀’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인적구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물질 한번 해본 경험이 없는데도 어촌계나 해녀회의 구성원과의 가족이나 친분관계를 이용해 어촌계장이 내준 허위 증명서를 토대로 해녀증을 발급받아 병원비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³⁴⁾ 이는 어촌계와 해녀회 모두 외부의 간섭이 적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32) 어촌계의 회관, 해녀탈의장, 공동창고 등이 해당된다.

33) 어촌계의 공유재산에 대한 지분확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공동재산의 가치 추정분을 어촌계원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어촌계가입비로 정하는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34) “제주지검 허위로 해녀증 발급 ‘가짜 해녀들’ 약식기소”, <미디어제주>, 2019.3.28.,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410>>(검색일: 2020.11.07.).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운영중인 2곳의 해녀학교 중 하나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해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녀학교 마다 차츰 직업 양성반이 개설되고 인턴제를 실시하면서 점차 젊은 해녀 지망자들에게도 해녀회의 문호가 개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귀덕2리에 해녀가 33명이었는데 (해녀학교 취업 양성반) 새로 들어 와서 41명. 여덟사람이 들어왔지. 해녀부에 가입하려면 공금이 있어. 한 백만원(100만원). 우리는 많이 안 받아. 한 백만원 받으면 그냥 양식장(바다)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 귀덕리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능해.³⁵⁾

그렇다고 신규해녀 등록이 꼭 연령대가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해녀회가 있는 마을의 주민이지만 해녀로 활동한 적이 없는 여성이 신규해녀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이 역시도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보며 형성된 평판이 크게 작용한다.

마을에서 어촌계가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은 마을어장의 어업권을 어촌계가 독점적으로 갖도록 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생기면서 시작된 것이지만, 어촌계로의 관리 일원화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명목상으로는 육지의 농경지에 적용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유사하게 마을공동체에게 연안바다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리책임과 더불어 수익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수협으로부터 어촌계로 이어지는 위계를 통해 수매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어촌계의 어로활동의 결과물이 수협의 수매제도를 거치게 함으로써 가격관리 내지는 수출의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가 오히려 해녀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했다. 중간상인을 통한 개별적 거래를 통해 판로를 마련한 이전과 달리 수협과 어촌계를 통한 일괄적 수매로 전환되면서 물질작업의 현장에도 수매당사자의 편의를 맞추기 위해 공동작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작시간과 마감시간

35)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구술조사 전사(한림읍 귀덕리-2)”, <제주학연구센터>, 2019. <<http://www.jst.re.kr/jejustudiesDetail.do?cid=040100&mid=RC00091192>>(검색일: 2020.9.20.).

을 지정하여 물질작업을 마치면 대기중이던 어촌계 담당자가 계량작업과 동시에 수매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해녀들의 공동작업은 이전에도 존재해온 것이지만 수매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필요성이 증대된 측면이 있는 셈이다. 공동작업을 준비하면서 작업시간의 설정 등과 관련하여 의사소통도 늘어나고, 마을 전체의 해녀들이 물질작업에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공동체 전체가 협력해야할 필요성도 증대된 것이다. 이는 수협, 어촌계, 해녀회로 이어지는 행정편의적 계층화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결과로 해녀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간적 기반 : 마을어장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의 해녀들에게는 육지로의 출가물질이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1895년 부산 영도로의 진출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연안은 물론이고 해방이전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를 오가기도 했다. 해녀의 출가물질은 산업기반이 부족한 제주도에는 주요한 수입의 원천이었다. 일제강점기 이래로 해녀들은 ‘관행 어업권’이라는 명목으로 제주 연안은 물론이고 출가물질을 수행한 지역에서도 나잠 어업을 통한 어업권을 인정받았다.³⁶⁾ 이는 해방 이후 제정된 수산업법에도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유지되면서 출가물질로 오가던 바다에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³⁷⁾ 하지만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중대한 상황변화를 맞게 된다. 법적으로 마을별 어촌계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더

36) 해녀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어업령(1911년 6월 3일 제정, 1912년 4월 1일 시행), 조선어업령(1929년 1월 26일 제정, 1930년 5월 1일 시행)등을 통해서였다. 일본 어업법령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던 관행어업권을 당시의 식민지 조선의 법령에 그대로 이식한 것이었고 따라서 제주 해녀들에게도 관행어업권이 보장되었다. 제주 해녀는 조선시대부터 진상과 공납을 국가의 요구에 따라 담당해왔고, 그러한 부담이 사라진 이후에도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혹은 잉여를 시장에 팔기위해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입어관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개항이전의 조선 사회에서도 인정받던 부분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 대한민국 법률 제 295호, 1953년 9월 9일 제정, 1953년 12월 9일 시행.

불어 점차 마을어장 어업권 부여의 당사자가 되면서 해녀들의 출가물질에 제동을 거는 지역이 생기게 된 것이다.

1967년 3월 경상북도의 감포, 양포, 구룡포 어업협동조합이 제주도 출가해녀 1,070명을 상대로 ‘입어관행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³⁸⁾ 이에 해녀들이 패소하면서 출가해녀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받게 되었다.³⁹⁾ 그 결과 출가물질을 통해 소득을 얻어온 제주해녀의 상당수가 결혼을 통해 현지에 정착했다. 육지에도 상시적으로 해녀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출가물질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제주해녀들의 주요한 관심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바다로 옮겨갔다.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것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바로 마을어장의 경계를 두고서 인접한 마을 간에 분쟁이 빈발하게 된 것이다. 마을어장의 경계문제가 수익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쉽지 않고 첨예한 분쟁사항이 될 소지가 충분했다. 특히 어촌계의 성립 이전인 1962년 이전의 경우에는 당시의 고소득 환금작물이던 미역의 채취와 관련된 것이 어장분쟁의 중요한 이유였다. 이후 마을어장의 소유와 관리가 어촌계로 일원화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한층 가속화 된다.

수산업법은 제정 이후 20여 차례가 넘게 개정이 될 정도로 복잡한 변천과정을 거친 바 있다. 시기마다 어업활동과 관련한 규정의 신설, 폐지가 이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어촌계와 마을어장과 관련된 것이 제도변화의 상당히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다음 [표 6]은 해방 이후 수산업 관련 법령의 주요 변화를 간추린 것이다.

38) 울릉도, 독도까지 포함되는 경상북도 지역은 제주와 마찬가지로 쿠로시오 해류의 경로에 해당되어 자리돔, 뽕에돔, 한치 등 제주와 상당부분 유사한 해양생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제주해녀들에게 친숙한 어장이었다.

39) 입어관행권 소멸확인 청구소송의 패소 이후 제주해녀의 진출경로는 경북이 아닌 경남, 전남, 강원으로 변화가 있었고 이마저도 제약이 적지않게 있었다. 제주도에서도 해녀 안보내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표 6. 수산업 관련 법령의 주요 변천]

| 법령의 변화 | 년도 | 주요 내용 | 비고 |
|------------------|-------------|---|--------------------------------|
| 수산업법(제정) | 1953.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어업’ 용어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공동어업’으로 규정 ■ 면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나잠어업 명칭으로 해녀물질 인정 ■ 관행어업 인정 | |
| 수산업협동조합법(제정) | 1962.1.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설립근거 제시 | 제주도내 5개 어협조합설립 |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정) | 1962.3.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의 구역은 ‘부락단위’로 함 ■ 소속 어협(수협)소유의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의 전용 | 1963년 말까지 34개 어촌계 설립 |
| 수산업법(개정) | 1963.4.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에서 공동어업수심을 15m로 지정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정) | 1964.3.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별어업협동조합에 어촌계 지도권한 부여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정) | 1967.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의 어촌계 감독권한을 도지사 또는 수협중앙회장으로 확대 | |
| 수산업법(개정) | 1975.12.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우선순위에서 어촌계를 어업협동조합보다 우선순위로 함 ■ 어촌계의 어업권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고,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정함 | 1911년 이래 어협에 부여하던 어업권을 어촌계로 이양 |
| 수산업법(개정) | 1995.12.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어업’으로 일원화 ■ ‘마을어업(최간조시 수심7미터)’ 개념의 신설 ■ ‘영어조합법인’제도 도입 및 어촌계보다 후순위 어업권부여 ■ 양식어업을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하면서 활성화 추구 | |

어촌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2년 3월 30일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통해서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어촌계의 구역은 기본적으로 부락단위로 하고,⁴⁰⁾ 공동어장의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수개의 부락 또는 리(里), 동(洞)을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원활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1960년 초부터 제주에는 마을어장의 경계를 둘러싼 마을간의 분쟁이 급증하였다. 다음의 [표 7]은 마을어장 간 분쟁이 빈번했던 1960년대 이후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인데, 언론에 보도되고 행정의 중재가 필요했을 정도로 분쟁의 강도가 매우 강했다. 분쟁 사례 중에는 약한 강도로 진행되다가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 마을어장 분쟁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40) 지금도 농어촌에서 흔하게 ‘자연마을’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원래는 일본에서 천민, 전염병 보균자 등의 집단거주지 거주자를 피차별부락민(被差別部落民)이라는 용어로 쓰던 것이 부락민으로 줄여 사용하면서 차별과 비하의 의미가 있어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여기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로 사용한다.

[표 7. 마을 간의 어장구역 분쟁]41)

| 년도 | 분쟁 마을 | 내용 |
|-------------------|----------------------|---|
| 1961 | 애월읍 금성리 : 한림읍 귀덕리 | 바다쪽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빚어진 분쟁, 행정관청의 읍면경계 확정으로 어장 |
| 1961 - 1962 | 구좌읍 하도리 서동 : 면수동 | '섬여여'를 둘러싸고 분쟁, 폭행·고소로 북제주군 당국이 중재, 조정안 합의. |
| 1961 - 1963 | 표선면 표선리 : 세화리 | '들렁물 가마리 갯가'를 두고 어장경계선 분쟁, 측량으로 표선리 어장임을 알기 법 제40조에 의해 세화리에 관행권 인정하여 입어토록 통고, 재분쟁. 남제주군 화해하여 양리간 어장분쟁 해결. |
| 1961 | 성산읍 성산리 : 오조리 | 1953년 성산리는 '용조리'어장, 오조리는 '가린여'어장 단독입어하고 '가무색' 바 있으나, 1961년 미역채취기를 맞아 성산리 해녀들이 '가린여'어장 선점 입어 들 집단 분쟁으로 비화. 수차례 조정회의로 성산리는 '용조리'와 '가무색기', 입어 합의. |
| 1964 | 애월읍 가문동 : 미수동 | '너북이여'어장 두고 분쟁, 양리 공동입어하기로 합의. |
| 1962 - 1963 | 애월읍 신엄리 : 중엄리 | 미역채취시기 마을경계를 중심으로 분쟁, 양리 1천여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소 협 조정으로 어장경계확정과 조정으로 해소. |
| 1962 | 안덕면 대평리 : 하례리 | '작은난드르'어장은 하례리 지선으로 해녀수가 모자라 인근 대평리 해녀들과 식 고조로 하례리 단독조업하려는데 대평리 측 반발, 분쟁. 남제주군 당국 조 종전대로 공동입어 합의. |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60년사:1946~2006』, 제주특별자치도, 2006, 247-252쪽 내용을 표로 정리.

| | | |
|-------------------|----------------------|--|
| 1962 - 1963 | 성산읍 신산리 : 삼달리 | 마을경계선 기준 고수하려는 삼달리측과 과거 입어관행으로 공동입어 주장하 장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 대표자에 종전 어장경계선 고수, 공동어장 3일간씩 수락함으로 종결. |
| 1957 - 1963 | 한림읍 수원리 가좌동 : 대림리 | '대섬바당'은 가좌동 어장 주장과 중산간 마을 대림리도 관행권이 있다는 주 중재로 종전 관행 인정 공동으로 입어 합의로 일단락. |
| 1964 - 1965 | 우도면 후해동 : 비양동 | 1964년 해금일에 경계선을 넘어 집단폭행사건 발생, 1965년에도 재발하여 부 정위원회가 합의 보도록 종용하여 후해동 '분균지로부터 운선앞은여', 비양동 정으로 오랜 분쟁 종식. |
| 1964 - 1970 | 성산읍 시흥리 : 구좌읍 종달리 | 시흥리와 종달리 어장 경계지점의 '고등어' 분쟁. 집단총돌로 그 어장에 두 마 어오다 1970년 수중조사촬영 결과 종달리 소유로 종결. |
| 1965 | 한림읍 월령리 : 금능리 | 산과 바다에 대한 분쟁. 월령리의 조림지 간벌에 금능리 권리를 주장하며 미 입어금지. 공동어장 이용하는 나머지 7개 마을이 두 마을 분쟁으로 입어를 한하여 월령리 입어 정지, 나머지 8개리 입어 결정. |
| 1968 | 한경면 용당리 : 용수리 | 용당리 지선과 관행어장 용수리의 미역채취시기에 분쟁. 용당측이 1회 선 입어 |
| 1985 - 1987 | 성산읍 오조리 : 고성·신양 | '광치기여'와 '백기여'어장은 1981년까지 격년제로 어업권 행사. 1982년부터 찰, 1987년까지 종전대로 격년제. |

물론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이전에도 마을어장의 경계와 관련한 마을 간의 권한 다툼이 제주사회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해안마을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여부가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했다.

오래전부터 마을어장 인근의 바다나 해안가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에 이를 예의를 갖춰 처리하는 것이 각각의 해안마을이 수행해야하는 불문율에 가까운 의무였다. 하지만 귀찮아서 혹은 체면을 따지는 반촌의 특성에 의해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장의 관리권이 시신을 처리한 마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김영돈(1996)의 『제주의 해녀』에 소개된 애월읍 납읍리와 애월리의 사례를 보면 납읍리 측에서 반촌의 체면을 이유로 시신의 처리를 하지 않게되자 마을어장의 소유권이 애월리로 넘어가게 된다.⁴²⁾ 또한 구좌읍 행원리의 경우에는 귀찮은 시신처리의 의무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웃마을인 한동리는 물론이고 월정리의 마을어장까지 확장되면서 당초보다 훨씬 넓은 마을어장을 갖게 되었다.⁴³⁾ 어장 관리의 책임과 권리에 따른 이러한 마을어장의 경계는 1960년대 마을어장을 둘러싼 분쟁의 과정에서도 문제시 삼지 못할 정도로 공고하게 유지되었다. 마을어장은 풍요로운 생산의 터전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무가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1960년 초반 이후 마을어장에 대한 독점적이면서 포괄적인 권한이 어촌계에 주어지게 되면서 더 넓은 물질영역을 확보하려는 해녀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마을어장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은 폭력적인 양상까지 보일 정도로 분쟁의 강도가 확대된다. 다음은 1962년 구좌읍 하도리에서 두 자연마을 사이에서 발생한 마을어장 분쟁과 관련한 신문보도이다.

오랫동안 계속되던 이곳 하도리 면수동과 서동 간의 어장분쟁은 지난 1일 양 동대표들이 군과 면행정실무자들의 입회아래 쌍방간 협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본 바 있는데 4일에는 또 다시 전기와 같은 협정을 무시하고 경계선을 월선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 4~5명의 경상자가 생기는 등 불상사가 발생하였는데 경비경찰관

42) 김영돈, 『제주의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1996, 417쪽.

43) 김영돈, 위의 책, 1996, 417쪽.

들의 출동으로 사태는 수습되었다. 이날 강 북군수와 이 제주서장은 면수동과 서동 양측대표자들을 구좌지서까지 초치하고 앞으로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바 있는데 수년간 계속 해온 동 어장분쟁의 일조일석에 해결되기는 어려운듯 하다.⁴⁴⁾

구좌읍 하도리 내의 자연마을인 서동과 면수동 사이의 분쟁이다. 인접한 두 자연마을이 서로 어장의 경계를 두고 30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것인데, 위의 신문보도보다 앞선 1961년 4월에도 주민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같은 ‘하도리’의 주민이고 상호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어장의 경계와 관련해서는 서로 양보를 허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방 이전에 비해 해녀들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어 제주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을 벗어난 해녀들의 외부에서의 물질활동, 즉 출가물질이 해방 이후에는 예전과 달리 일본, 중국, 러시아로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마을어장 분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했다. 출가물질이라고 해보아도 한반도의 남쪽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해방 이후 육지에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들과 어촌계에서 제주 해녀들의 물질을 견제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의치 않게 되었다. 육지에 설립된 어촌계들도 마을어장의 생산물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개항 이후 동아시아를 전방위적으로 넘나들며 이어온 제주 해녀들의 활동무대가 제주도로 한정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들도 삶의 터전을 제주의 바다로 한정하여 물질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제주바다를 두고 펼쳐지는 어장분쟁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마을어장 경계분쟁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성산을 시흥리와 구좌읍 종달리 사이의 분쟁은 1964년에 발생해 1970년에야 종결을 맞이하게 되는데, 분쟁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결국 해군 UDT대원들의 수중촬영이었다.

44) “수명이 부상사고, 하도어장분쟁 확정선 월경때문 재연”, 『제주신보』, 1962.4.29(강경민,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5).

성산면 시흥리와 구좌면 종달리 간의 해녀어장 분쟁을 매듭짓기 위해 지난 6일 수중촬영 결과 분쟁지점인 고등여가 넓은 세비여에서 종달리 쪽 약 10m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촬영결과에 따라 고등여는 세비여와 동일한 암초가 아니라 종달리 쪽 어장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종달리와 시흥리 양 쪽 대표들은 지난 5월 중순 문제의 암초(고등여)가 분리되어 있으면 종달리 쪽 소유이며 세비여 와 동일한 것이면 시흥리 소유로 한다는 최종 합의를 본 바 있다.⁴⁵⁾

마을단위 어촌계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어장분쟁의 해결과정이 해녀들에게 미친 영향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해녀들이 마을어장에서 발생하는 공유자원, 즉 수산물을 놓고 그것을 독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촌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해녀들의 배타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상업적인 대량채취가 아니라면 일정 정도의 채취는 용인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어장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배타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옛날에는 어업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말이지 조합원들이 말이야 뭐 무슨 받아서 꼭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옛날에는 말이지 완전히 자율적으로 물질 하러도 다니고 바다에 가서 고등 아무거라도 잡고 먹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규제가 돼 가지고 수협에다가 어촌계원으로 말이지 가입하고 조합원이 아니면 바다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서 잡으면 벌금도 내고 법적인 조치도 받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고⁴⁶⁾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개방어장이 아닌 어촌계 소유의 마을어장에서 보말이라도 줍다가 해녀들로부터 쫓겨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늘날 해녀를 바라보는

45) 「종달리 쪽에 위치 수중촬영결과 밝혀져」, 『제주신문』, 1970.6.13(강경민,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5, 144-145쪽.).

46)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27.한림읍 옹포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9. 199쪽.

시선이 일부에서나마 곱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해녀가 제주바다에 대해 불가침의 기득권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비판도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⁴⁷⁾ 심지어는 해녀들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옛날도 임시 해다가 먹는 건 심하게 막진 않았지. 그런데 이제는 툷 꼬리 만졌다면 악마들처럼 사람 잡아먹을 듯이...(중략)...툷 먹으려고 하면, 툷 꼬리 해오려고 하면 못하게 해 잡녀들이. 그거 하나 건드렸다가 사람 죽일 듯이 해녀들이 해.⁴⁸⁾

마을어장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이 어촌계, 해녀회에 주어지면서 마을어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증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촌계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마을어장 어업권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업권을 가진 어촌계가 채취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나잠업자(해녀를 고용하여 마을어장을 옮겨다니면 채포활동만을 하는 업자)나 잠수기어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어장이용의 권리를 넘기는 ‘빈매(濱賣)’가 성행하게 된 것이다.⁴⁹⁾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어업권의 임대차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암암리에 여기면서 ‘바다를 파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마을어장의 활용이 해녀의 존재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육지 마을어장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제주해녀에 대한 관행어업권의 소멸로 인하여 제주해녀의 유입이 중단된 채 오로지 정착해녀에 의해 마을어장의 활용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정착해녀의 고령화와 더불어 제주해녀의 신규진입이 사라지면서 마을어장의 활용조차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빈매가 이뤄지는 해

47) 예를 들어, 해녀들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소라, 해삼, 멍게를 불법적으로 남획해서 제주연안의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고 스쿠버 다이버들은 이른바 ‘해녀우상화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어로활동이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녀의 어업독점권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제주도 수산정책과)도 ‘제주 인근어장은 해녀들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어업독점권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보말 등을 채취할 때에도 해녀들의 강력한 제지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해녀 및 해녀의 어업독점권에 대한 의문, 즉 ‘제주바다가 모두 해녀들 것이냐’는 불만이 없지 않다. (‘제주도 해녀 vs 다이버, 누구 주장이 옳을까?’, <조선일보>, 2017.07.3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2104.html>(접속일: 2020.9.14.).

48)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11.조천읍 함덕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8, 145쪽.

49) 농림수산식품부, 『연안어업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25쪽.

당 지역의 마을어장의 경우 어장황폐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비용을 지불하고 어장이용권을 획득한 나잠업자, 잠수기어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마을어장에 대한 생태적 고려없이 지불한 금액을 상회하는 수익의 확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⁵⁰⁾

물론 제주의 경우에도 어촌계가 마을어장 어업권 일부를 전화(電話)도입의 명목으로 넘긴 사례가 있다.⁵¹⁾ 하지만 육지의 ‘빈매’ 경우와는 달리 마을어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권한이 아닌 ‘툃’과 같은 일부 품목의 경우에 한정되어서 이뤄졌고, 그마저도 해녀들의 반발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빈매라는 것이 마을어장의 면적에 비해 해녀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육지에서 현재에도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빈매가 이뤄지는 지역은 어장황폐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은 빠르게 해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제주의 현재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제주의 해녀가 소멸위기를 맞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제주에서도 빈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해녀들의 물질이 가능한 지역이 제주지역의 바다로, 그것도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바다로 한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내 바다’, ‘우리 바다’의 개념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한번의 물질로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거두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를 수확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지속적인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는 제주의 해녀공동체가 생태주의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50) ‘빈매’를 통한 마을어장에서의 약탈적 어업은 해녀들의 출가물질에서도 나타난 양상이다. 출가물질의 경우 숙박비나 식비 같은 기본적인 경비 외에도 해당 지역의 마을어장 관리권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해녀들 역시 출가물질의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물질 역시 최대한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약탈적’ 어업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51) “해녀공동어장의 어업권 암매는 있을 수 없다”, <제주신문>, 1971.05.06(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219쪽.).

Ⅲ. 어장 황폐화 위기와 해녀공동체의 대응

1. 잠수기선에 대한 비타협적 대응

제주 해녀들에게는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위의 어머니로부터 전해져온 공통의 기억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근대 초기 해녀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일본 어부들의 제주바다 침탈, 특히 잠수기선인 일명 머구리배들의 출현이었다.⁵²⁾ 제주도 연안으로 전복과 해삼을 주로 채취하기 위해 도입된 이들 잠수기선은 제주바다의 밑바닥까지 훑어서 전복과 해삼을 모조리 캐어갔다. 당시 이러한 상황은 1889년 제주에 유배를 왔던 운양 김윤식(金允植)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어제 고기잡이 일본 사람들이 성안에 들어왔는데... 배마다 하루에 전복을 잡는 게 600개라 한다. 제주의 각 포구에 일본 어선이 무려 3~4백척이 되므로 각 배가 날마다 잡아버리는 게 이런 숫자라면 이미 15~1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숫자가....”⁵³⁾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잠수기선이 제주해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보다 오래된 20년 전인 1879년의 일이었다. 일본 잠수기업자인 야마구치현 출신 요시무라 고자부로(吉村興三郎)가 비양도(飛揚島)에 진출한 것이 최초의 잠수기선 출현이었다.⁵⁴⁾ 이 시기에 시작된 잠수기선의 약탈적 어업은 제주 연안어장의 급속한 황폐화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 잠수기업자가 제주 해역에서 활동을 한지 10년 남짓 시간이 흐른 1892년 일본인 세끼사와 아기요시가 조선 외무주사 이현상과 함께 제주도 에 와서 실시한 <제주현지조사보고서>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다.

52) 속칭 머구리배, 헬멧을 쓰고 배에서 산소를 공급 받는 방식, 한번 잠수로 30분 이상 물에 머무를 수 있으며 수심 30m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53) 『속음청사』 권下, 1899년 8월 29일.

54) 이지치 노리코, 『日本人學者가 본 제주인의 삶』, 경인문화사, 2013, 98쪽.

제주도 연해에 모여든 일본의 잠수기선은 도합 70~80척이 되고 매일 전복 생패를 400~599관을 쉽게 포획할 수 있었으나 남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루 130관을 넘는 일이 드물어 이대로 두면 3~5년 안에 자원이 멸종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제주 연안 수산물의 재생산구조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곧 현실화된다. 다음은 1911년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일부이다.

일찍이 일본 잠수기업자가 도래하여 남획한 결과 지금은 크게 줄었다. 현재는 토착 잠수부녀가 전복을 채취하지만 종일 조업해도 겨우 한두 개를 넘지 못한다. 일본 잠수기업자는 점점 깊은 곳까지 가서 잡기 때문에 다소 어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옛날과 같이 이익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⁵⁵⁾

일본어민들에 의한 약탈적 어업의 결과물은 제주바다의 황폐화 그 자체였다. 이는 잠수기를 동원한 어로활동이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약탈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함께 생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다 생태계가 그러한 약탈적 어업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 황폐화의 정도가 쉽게 눈에 띄는 육지와는 달리 바다 속 상황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의 입장에서는 고갈되어가는 어장의 모습에 한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계기로 제주 해녀들 사이에서는 재생산의 여지와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는 약탈적 어업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일본의 잠수기선은 황폐해진 제주바다를 떠나 다른 곳에서 어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제주의 해녀들은 온전히 제주바다를 근거지로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근대적 어업에 의해 제주도의 영세어민이 대타격을 받고 영락(零落)하게

55)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편찬, 김은희 편역,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1911)』 제3집 제4장, 제주발전연구원, 2010.

되는 사정이 있다. 1907년(明治 40년)경부터 일본 어업회사의 어선, 특히 北九州, 西部中國지방의 어선은 제주도 근해에 출몰했다. 제주도 주변은 세계적인 호어장이고 조선에서도 굴지의 어장이다. 여기에 옛날부터 재래식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어민의 눈 앞에 근대 어법으로 어장을 황폐화시키니 어민들은 망연 영락해질 수 밖에 없었다.⁵⁶⁾

이로 인한 결과는 영세어업에 종사하던 제주어민들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장의 임금노동자로 취업하고, 해녀들의 상당수가 제주바다를 떠나 육지는 물론 타국의 바다로 이른바 ‘출가물질’을 떠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는 출가물질이 본격화된 시기의 동아시아 사회가 중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 극동지방까지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출가물질로 벌어들이는 해녀의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1922년에 19만엔, 23년엔 22만엔으로 증가한다. 이는 1929년 당시 제주도내 해녀 7,300명이 도내 연안에서 생산 활동으로 25만엔을 벌어들인데 반하여 일본으로 출가한 해녀 3,500명이 40만엔 정도를 벌었다고 하니 출가해녀의 수입원이 제주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하지만 출가해녀의 비약적 소득증대의 이면에는 현재의 해녀물질과는 다른 양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출가물질의 대상이 된 바다는 해녀들이 나서 자란 고향의 바다가 아니었고 출가물질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초기자금이 필요했다. 때문에 타지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은 고향 제주의 바다에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시간의 노동을 통해 상당히 약탈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현재의 제주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녀의 물질과는 양상이 사뭇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제주로 해녀들의 활동 영역이 좁혀지면서 더 이상의 출가물질이 여의치 않게 된 상황에서도 제주의 바다에서 활동하는 잠수기 어선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허가받은 잠수기 어선만 하더라도 1967년에 17척이던 것이 오

56) 金贊汀, 『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 岩波書店, 1985, 96쪽.

57) 출가의 경우 수입을 현금으로 가져와서 그 금액을 유추할 수 있으나 명확치 않다. 하지만 일본에 출가한 해녀의 경우 송금액이 존재하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濟州道勢要覽)』, 1939.).

려 1972년에는 24척으로 늘어났다. 이에 더해 무허가 잠수기 어선의 조업도 1960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이는 해녀들에게 지극히 예민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봄철에 접어들면서 천해 어장을 휩쓰는 범칙어선들의 횡포가 부쩍 늘어나 말썽이 되고 있는데 18일 북군 수산당국자에 의하면 2~3일간에 세 건을 입건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북군 해역에는 육지부 완도 여수 등지에서 몰려온 잠수기선들이 15척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금지구역인 제 1종어장에서 도로(盜擄)가 한창이라고 한다. 북군 수산당국은 얼마 전 애월면 동귀리 1종공동어장에서 전복 소라 등을 잡아 올려진 잠수기선 3척 (완도선적) 을 입건 조사 중이며 17일에는 구좌면 월정리 앞바다에서 몰래 어로작업을 하던 다른 1척을 입건 도구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잠수기선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선어협과 해녀들은 이 같은 범칙어선의 단속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⁵⁸⁾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잠수기 어업의 존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마을어장에서 전복과 소라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이었다. 잠수기어선은 마을어장에서의 작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시기 해녀들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잠수기어선의 마을어장 침입과 불법어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적극적인 불법어로행위 감시활동이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감시과정에서 해녀와 잠수기업자 사이의 갈등은 폭력적 양상으로 확대되곤 했다.

금지된 해녀 공동어장에서 전복 소라 등을 마구 캐던 잠수기선이 격분된 어촌계원들의 추격 끝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었다 지난 21일 오후 6시경 한림읍 비양도 속칭 서비여 바다 7개리 해녀공동어장 (월령, 금릉, 협재, 옹포, 한림, 한수, 수원)에서 전복 소라 등 각종 해산물을 캐던 금영호가 옹포리 어촌계장 한익수씨와 계원 고명희씨 6명에 의해 붙잡혔다. 이들은 5개월 전부터 한수리에 정박해 있으

58) 강경민,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학연구』 22, 제주학연구센터, 2015, 156쪽.

면서 각리 해녀 공동어장을 침범 각종 해산물들을 마구 캐버려 바다를 믿고 사는 영세 해녀들을 울려왔다 그런데 이러한 잠수기선은 현재 한림에 3척이 있는데 이들이 채취해 온 전복과 소라는 한림어촌계 모 간부에 의해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59)

해녀들은 행정당국에 지속적으로 단속의 필요성을 개진하면서 어장황폐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잠수기어업의 퇴출을 요구했다. 핵심은 마을어장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잠수기 어선으로 인해 소라 등의 남획이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설득력을 갖고 제주도민사회에서 점차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게 되었고, 결국 행정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제주도 행정당국은 해녀와 잠수기업자 사이의 분쟁을 막고, 소라 등의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어 잠수기 어선을 매입해 감척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잠수기 어선 선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하게 되면서 1997년 제주 연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잠수기 어선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해녀들의 공동대응이 제주바다를 황폐화시킨 잠수기어선을 100년 만에 사라지도록 한 셈이다.

해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은 해온 것은 나름 역사가 깊다. 가장 앞서고 널리 알려진 해녀들의 집단행동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1932년의 해녀항쟁이다. 충분히 일제의 통치에 반대하는 성격도 갖고 있기에 항일운동의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단계적 착취로 침해되던 해녀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지키기 위한 측면이 일차적으로 작용했다. 채취한 해산물을 공동판매 하기로 정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해녀조합이 상인과 결탁하여 일본상인에게 독점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끼치고, 해산물 판매 대금 지불도 늦어지면서 해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끼친 것이 해녀항쟁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된다. 당시에는 이러한 양상이 해녀조합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당국에서 축산조합, 어업조합, 연초조합 등 다양한 어용성격의 조합들을 설립해 간접적 수탈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이다. 결국 각성된 지도부를 제외한 다수 해녀들의 경우에는 일제에 저항한 측면보다는 생활적인 이유

59) “해녀어장 짓밟던 잠수기선”, <제주신문>, 1974.06.24(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231쪽.).

로 해녀를 수탈하던 조합의 횡포에 반대했던 측면이 강했던 것이다. 해녀항쟁의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이 해녀들의 투쟁은 생활에 밀착한 요구, 그 중에서도 어장의 건강성을 지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에 반발하는 성격이 강했다.

마을어장과 관련된 생활적인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해녀들의 집단행동 사례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 후반 제주사회에 큰 영향을 준 탐동매립 반대운동 사례 또한 해녀와 관련이 있다. 1976년 제주시는 탐동 지역의 월파 피해를 방지하고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임해관광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탐동매립 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매립은 1980년 5월에 완공되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기업에게 1986년 12월 24일에 매립면허를 발급한다. 공공성 없이 개인에게 발급함으로써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탐동 해안을 이미 이용하고 있던 어촌계나 해녀회에는 동의서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의 불공정한 배분,⁶⁰⁾ 탐동 먹돌의 매립지 밖 이전 약속 불이행 등으로 인해 해녀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1988년 3월 8일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해녀들로 이뤄진 산지어촌계 소속 삼도동 잠수회 해녀 43명은 “어민생계 보장하라”, “시행사는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매립공사 현장사무소 점거를 시작하여 농성을 50일 가까이 이어갔다. 물론 반대운동 초기에는 지역사회의 인식이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우리 농성하는 걸 시청에서도 잘못했져, 경찰이영, 수협에서도, 어촌계까지도 잘못했져, 이웃사람덜도 돈받아 먹고 너무한다는 식으로 끝는거라⁶¹⁾

사업자가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주기로 하면서 해녀들의 점거 농성은 마무리되지만 그 과정에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다. 반대운동을 거치면서 해녀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주민주체 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연대활동을 펼쳐나갔고, 이후 제주사회의 각종 개발사업

60) 1987년 6월에 이뤄진 보상에서 횡집에 대해서는 3,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공동어장 상실로 피해가 큰 해녀들에게는 각각 6백만원이 지급되었다(장훈교, 「제주탐동 공유수면 매립반대운동: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탐라문화』 9(60), 탐라문화연구원, 2019, 265-303쪽.).

61)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제주본부, 「제주의 소리」, 『제주민주화운동사료집 I』,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1989, 273쪽.

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단초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해녀들의 점거농성에서 비롯된 개발반대투쟁은 이후 제주의 다른 지역민들에게도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고 이는 1988년 5월 이후 신촌리 대섬유원지, 사수동 하수종말처리장, 한림항 매립공사, 도두동 분뇨처리장 등을 둘러싼 주민운동이 잇따라 일어나는 계기로 작용했다.⁶²⁾

사후적 평가를 통해 제주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것이 해녀들이 시작한 탐동매립 반대운동이지만 초기부터 해녀들의 주된 관심사는 다름이 아니라 ‘매립을 할 경우 해녀들은 물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이는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1997년 12월 31일에 착공해서 2007년 6월에 완공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두고 구좌읍 김녕리 해녀들이 벌인 반대운동 역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에도 반대운동의 중요한 쟁점은 과연 해녀의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애당초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인접한 구좌읍 월정리였기 때문에 김녕리 해녀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하수처리시설의 방류관 위치가 설계과정에서 김녕리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김녕리 해녀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김녕리 사례에서는 해안지대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해녀들이 갖는 독특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공사업체와 행정당국에서는 방류하수관이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90°에 가까운 직선으로 1km이상 벗어나 설치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김녕리 해녀들은 김녕리 바다의 생태지리학적 특성을 제시하면서 하수관의 위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녕리 바다의 특징은 수심이 낮은 암반지대가 넓게 분포되어있다는 점, 하수정화 후 방류를 할지라도 해양 동식물의 폐사로 이어져 해녀들의 생산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조류에 따라 방류위치와 무관하게 밀물이 되면 연안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나갔고 결국 해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다생태계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면서 분쟁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유대감이 강한 해녀공동체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마을어장과 관련된 현안에

62) “탐동매립반대운동과 그 이후의 30년을 생각한다”, <제주대미디어 JUMP>, 2018.11.15., <<http://m.news.jeju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2>>(접속일: 2020.10.25.).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근래에도 제주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반대시위,⁶³⁾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된 반대시위 등이 신문 지면을 수시로 장식하고 있다.⁶⁴⁾ 해녀들의 요구사항에는 대부분 생존권의 보장의 명목으로 어장피해의 보상이라는 것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기에 얼마간의 금전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시위에 나서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어장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원인임은 분명해 보인다.

해녀들의 일관된 주장은 마을어장 경계가 외부인들의 시각에서는 구분되어 보이지만 실제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있다는 통합적인 바다 생태계 인식을 상정하고 진행된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마을어장은 어머니 해녀들로부터 물려받고 가꿔온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는 인식에 주장의 기반을 두고 있다. 물질작업을 통해 소득을 거두고 가족 생계의 유지와 확대를 도모해온 소중한 터전이고 인위적인 훼손만 없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생산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해안개발 사업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녀들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보상을 원하고 반대운동을 한다는 시각은 매우 일차원적이다. 외부의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마을어장의 존재 자체가 해녀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해녀공동체의 집단적 저항으로써의 반대투쟁은 자신들이 직접 물질을 하는 마을어장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기에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고무땀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

해녀의 물질은 근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차도 기술적인 발달이 그다지 없어 보인다.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오로지 해녀 자신의 신체 에너지와 숙련된 기술을 통해서 물질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져 왔다. 기계적인 장치를

63) “한동 해녀들도 시위...“한동.평대 해상풍력 결사반대””, <헤드라인 제주>, 2020.04.28.,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865>>(접속일: 2020.09.30.).

64) “제주 하모리 해녀 "하수처리장 공사로 흙탕물 유입돼 어장 피해””, <연합뉴스>, 2019.05.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9111600056?input=1195m>>(접속일: 2020.09.30.).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친환경적이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는 기계의 도입에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김춘택(金春澤, 1670~1717년)의 한문수필인 「잠녀설」에 나오는 빗잠녀의 물질하는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다.⁶⁵⁾

나는 갯가에 가서 땀감을 놓고 불을 지피어 몸을 빨강게 달구고는 가슴에 곱(테왁)을 붙이고, 끈으로 짠 주머니(망사리)를 곱에 묶습니다. 이전에 잡았던 전복껍질을 주머니에 채우고 손에는 쇠꼬챙이(빗창)를 잡고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마음내키면 물 속에 잠깁니다....이 때 숨이 급해지면 즉시 나와 그 곱을 안고 숨을 쉬게 되는데 그 소리가 ‘휘익’하며 오래 나는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 후에 생기가 돌면 곧 다시 물에 잠깁니다. 그 먼저 알아두었던 곳에 가서 쇠꼬챙이로 따서 끈으로 짠 주머니에 넣고 출발하여 갯가에 도착하면 추위에 얼어서 오돌오돌 떨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드디어 땀감 불이 따뜻한 데 가면 생기가 돌아옵니다.⁶⁶⁾

300여년이 지난 오늘날 해녀들의 물질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면으로 된 물옷 대신 고무옷을 입고 물안경과 오리발을 착용했을 뿐, 테왁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 유명하다가 기계적 장치의 도움없이 숨을 참고 잠수하여 물건을 채취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해녀의 작업방식이 여전히 원초적이면서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입는 옷을 일반적으로 ‘물옷’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소중이, 물소중이나 드물게는 속곳으로 불렸다. 물옷은 허리 아래에 입는 ‘물소중이’, 옷웃인 ‘물적삼’과 머리카락을 묶는 ‘물수건’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중 물소중이는 소중이가 차츰 개선된 형태이다. 소중이가 하반신 정도를 가릴 수 있었던데 비해 물소중이는 상반신까지도 가릴 수 있게 길어도 길어지고 옆구리 부분도 트여

65) 빗잠녀에서 ‘빗’은 전복의 우리말이다. 전복 따는 잠녀를 ‘빗잠녀’라고 불렀다.

6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57쪽.

있고, 한쪽 어깨에 걸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더했다. 조선시대 말까지도 해녀의 물질을 ‘나잠어업(裸潛漁業)’이라 했던 것이 큰 과장은 아닌 것이다.

잠녀의 옷 한자로 짧고

알몸으로 만경파도에 무자맥질

요즈음 일은 버겁고 어물은 잡기 어려운데

채찍질 예사로 몇 번을 관아에서 다스리던가?

잠녀는 천으로 작은 바지를 만들어 음부를 가리는데 제주어로 ‘소중의’라고 한다.

알몸으로 바다속을 들고 난다⁶⁷⁾

소중이에서 물소중이로 변하듯이 해녀의 물옷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옷감이 비교적 흔해진 1960년대 이후에는 물적삼이라고 하여 물소중이 위에 입는 옷이 더해졌고, 물수건은 일명 ‘까부리’라고 하는 것과 병행해서 사용되었다. 까부리는 일본이나 육지로 출가물질을 나갔다가 귀환한 해녀들에 의해 보급되었다. 물수건을 대신해 까부리를 쓰는 정도의 변화는 약간의 편의를 더하는 것이었을 뿐 전통적인 해녀의 물질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던 해녀의 물질복장은 1970년대 초,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른바 ‘고무옷’이 등장한 것이다.⁶⁸⁾ 1965년 한·일간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제일동포들이 고향 방문시, 혹은 우편으로 한두벌씩 전해주던 것이 대거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어협 산지어촌계에서는 오는 (1971년) 6월말까지 해녀들의 장비를 스폰지 잠수복(일제 시가 개당 2만 3천원)으로 대체한다.

4월 26일 양치용 산지어촌계장은 총 171명의 해녀 중 80명이 현재 스폰지 잠수복을 착용하여 최고 9m 깊이에서 작업하던 것이 15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작

67) 조정철,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1824.

68) 고무옷은 이른바 네오프렌이라고 부르는 최초로 대량생산된 고무 화합물이다. 1930년에 개발되어 잠수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자동차 팬벨트, 호스 등에도 사용된다. 네오프렌이 잠수용 고무옷에 사용될 때에는 단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기공간을 질소로 채우는데 이는 고무옷이 부력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업능률은 해녀 한 사람이 종전 해녀의 10명분을 해낼 수 있으며 수중 작업시간도 종전에는 최고 1분이 고작이던 것이 2분 동안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근대 신(新) 해녀장비 개선사업은 성산, 서귀어협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⁶⁹⁾

전통적인 해녀의 복장인 ‘소중이’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가운 바닷물에 의해 체온이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작업 시간도 짧았다. 따라서 채취 가능한 해산물의 양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최첨단 고무옷의 도입은 해녀 물질의 생산성을 급격하게 증대시켰다. 하지만 ‘고무옷’의 등장에 대한 해녀사회의 대응은 대세를 따라야한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전면적인 도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마을(구좌읍 행원리) 잠수 중 최고령자이며 60여년간을 물과 더불어 살아온 박정열 할머니(78)는 ‘3년전만 해도 1시간쯤 작업을 하면 5~7kg의 전복, 소라를 채취, 2천여원의 벌이는 거뜨했으나 요즘은 전복채취가 매우 힘들며 소라 2~5kg을 채취할 정도’라고 1종 어장의 황폐되감을 한탄한다...(중략)... 개량 잠수복을 입고 작업할 경우 작업시간이 현재 1시간보다 배가 증가한 2~3시간을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이로 파생되는 자원채취는 어장이 황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수총회를 소집하여 개량 잠수복을 입지않기로 결의, 전 회원이 재래식 잠수복만 입고 입어하고 있다.⁷⁰⁾

고무옷을 입고 작업을 할 경우의 수확물은 보통 소중이를 입었을 때보다 3~4배 정도는 많아지는 것이 보통인데, 고무옷의 도입초기에는 신기술을 도입한 해녀와 그렇지 못한 해녀 사이에서 갈등이 불가피했다. 이는 1970년대 초반 고무옷이 최초로 도입될 시기에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서 발생한 해녀간의 분쟁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⁷¹⁾ 당시 동일리 해녀들은 고무옷 사용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으

69) “제주어협 해녀, 스폰지 작업복으로 바꾸기로”, <제주신문>, 1971.04.28(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해녀박물관, 2009, 218쪽.).

70) “해녀어장이 메말라가고 있다”, <제남신문>, 1973.09.10.(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해녀박물관, 2009, 224-226쪽.).

로 나뉘어져 있었다. 주로 아랫동네 해녀들이 주축이 된 찬성측은 착용할 경우 물질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입장이었고, 윗동네 해녀들로 구성된 반대측은 자원에 비해 채취량이 너무 많아 자원고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아랫동네 해녀 몇 명이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하여 전에 비해 4~5배 많은 수확을 거두자 윗동네 해녀들이 몰려가 수확물을 바다에 버리고 상대방의 고무옷을 찢어버리는 심각한 갈등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는 고소와 고발을 통한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가 결국 1974년 동일리의 모든 해녀들이 다 같이 고무옷을 입기로 하면서, 즉 신기술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고무옷을 둘러싼 동일리 해녀들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개인들의 해산물 남획우려에 대한 문제를 이른바 ‘마을어장 공동규약’을 통해 공동체 내부에서 규제할 방법을 찾았다는 점이다. 고무옷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동일리 해녀의 공동규약에는 번식기에 접어들었거나 일정 크기가 되지 않는 해산물의 채취를 금지하는 것, 작살처럼 어류까지도 체포가 가능하지만 무분별하게 남용될 수 있는 특정 어구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것, 어장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불가사리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는 것, 불법어로 활동을 행하는 어선들을 감시하는 것 등의 다양한 의무 등이 적시되었다. 한편으로는 해녀공동체의 공공성,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공동작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공동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회계의 기록과 보고 또한 의무화되었다.⁷²⁾ 공동규약에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마을 공동어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해서 일종의 휴식년제 비슷하게 순환제로 채취하는 제도 역시 이 시기에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한편으로는 고무옷이 도입되면서 해녀들의 직업병 역시 증가하는 부작용도 크게 늘어났다. 이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던 물질작업 시간이 5시간 전후로 크게 늘어나고, 작업하는 수심 역시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장시간의 물질로 인한 두통과 이명은 물론이고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한 위장병, 수압에서 오는 청각손상 등이 증가한 것이다. 고무옷이라는 신기술의 도입이

71) 김경돈·류석진,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순차적 해소를 통한 공유의 비극의 자치적 해결방안 모색: 제주도 동일리 해녀의 자치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3호,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1, 163-188쪽.

72) 원래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은 개인이 소매로 판매하던 방식이 많았으나 1960년대 시작된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제주 해산물의 일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협의 경쟁 입찰에 의해 계약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공동기금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생산성의 증가와 함께 해녀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 또한 가져온 것이다.⁷³⁾

만약에 고무옷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동일리 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기존의 관습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별다른 생산의 제약없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고무옷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아마도 동일리 마을어장의 무분별한 채취로 황폐화가 발생했을 것이다. 다른 해녀의 신기술 도입이 내 이익의 침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를 공적으로 제어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공동체 내부에서 생산의 공동체적 관리로 해결한 것이다.

신기술 고무옷의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한 해녀들 사이의 분쟁 사례는 1970년대 제주의 해안마을 곳곳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건이다. 각 마을의 해녀들은 고무옷의 전면적 도입 이전의 갈등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비록 마을마다 해녀집단의 크기와 어장환경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고무옷의 도입과 무관하게 무한정의 생산성이 보장되는 그런 마을어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발생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고무옷의 도입과정에서 마을어장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부적 제한을 스스로 가함으로써 오히려 제주해녀 집단의 공동체성을 한층 가속화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3. 자율적 생산통제로써 금채

어촌계별로 할당된 마을어장의 경계가 공고화되면서 어장의 관리주체인 어촌계, 특히 물질작업을 수행하는 해녀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해녀들 간의 경쟁이 가열되는 경우 마을어장의 효율성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량과 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한 내부적 조율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제주 해녀의 경우 물질작업의 원칙 중 최우선순위는 혼자서 물질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것이다. 안전을 이유로 공동작업이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 이는 자연스럽게 해녀 사회 내부에 공동체성이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어찌보면 제주해녀

7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 해녀옷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2, 34쪽.

공동체성의 역사적 기원은 물질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 해녀공동체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체적 특성을 관행 혹은 관습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근대 이전부터 확보해나갔다. 이는 물질작업의 경계와 생산량에 대해 논의를 하는 의사결정제도부터 시기에 따라 채취를 금지하는 ‘금채’, 공동체의 의무로 부과되는 바다어장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갯댕기’ 등의 제도를 포함한다.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이어온 해녀들의 전통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전통의 정신적 기반은 바로 무속의례이다. 해녀의 물질작업은 당연하게도 기상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막강한 권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절대자, 즉 신에게 안위를 비는 무속의례가 발생, 유지되어온 것이다. 물론 무속신앙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제주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을 단위의 당굿이 전승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는 해녀만의 문화라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마을의 신당에서 치러지는 당굿 중에서도 신과세제, 영등굿, 마불림제, 시만곡제 등이 4대 제의로 말해지는데 이 중에서도 영등굿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⁴⁾

영등굿은 음력 2월에 치러지는 의례인데 시기적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이면서 ‘영등바람’이라고 하여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농경은 물론 어로활동도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바로 이 시기에 겨울에서 봄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육지의 밭에는 오곡의 씨앗을, 그리고 바다의 밭에는 어패류와 해조류의 씨를 뿌려준다는 영등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농경과 어로 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해안가 마을뿐 아니라 중산간 마을에서도 치러진다.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직후인 2018년부터는 영등굿에 대해 행정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영등바람축제’의 형식으로 대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속의례가 해녀사회에 미친 영향중의 하나는 공동체의 결속을 보다 강화시켜준다는 점이다. 마을단위의 무속의례로 영등굿이 행해진다면 해녀들의 물질과 관련해서 영등굿과 별개로 잠수굿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⁷⁵⁾ 김녕리 잠수굿의 사례를 보

74) 강정식, 「당굿의 세시의례적 성격」,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85-113쪽.

75) 해안마을의 경우 영등굿은 해녀만이 아닌 어로활동 종사자들 전반의 무사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면 제물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공동으로 진행된다.⁷⁶⁾ 마을곳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준비하는 것이 보통인 제물을 잠수곳에서는 선배 해녀의 숙련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잠수곳에 사용되는 제물의 경우에는 만드는 방법, 절차, 제물의 형태와 개수 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바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을곳의 제물과는 차이가 있다. 잠수곳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잠수곳의 모든 과정에서 선배 해녀들과 후배 해녀들은 분업화된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해녀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성장하게 된다. 물질작업에 참여하는 해녀들의 무사고와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것이 잠수곳의 본래 목적이지만 의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녀공동체의 결속력과 유대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등곳 혹은 잠수곳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의 하나로 ‘씨드림’이라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⁷⁷⁾ 이는 곳을 하는 도중에 바닷가로 나아가서 쌀이나 좁쌀을 뿌리는 의례를 말한다. 그러한 씨앗들은 전복이나 미역같은 어패류와 해조류의 씨를 나타내는데 해녀들의 주요 생산물을 상징한다. ‘씨드림’이라는 의례는 해녀공동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산물이 바다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의 농경활동과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육지의 밭처럼 바다도 밭으로 생각해 ‘어경(漁耕)’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녀공동체의 결속력과 유대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기반으로 마을어장에 대한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마을어장에 주어진 배타적 권한이 해녀공동체의 강화된 공동체성과 자율적 의사결정과 결합되면서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다. 그중에서 해녀공동체의 자율적인 생산관리로써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금채(禁採)’제도이다. ‘금채’란 자원의 번식 및 생장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다자원 가운데 ‘미역’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⁷⁸⁾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까지도 금

측면이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데, 점차 영등곳이 잠수곳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76) 강소진, 「제주도 잠수곳의 의례형태와 의미」, 『역사민속학』 21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107-139쪽.

77) 민윤숙, 「제주 잠수 물질의 생태학적 측면: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물질’ 민속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125쪽.

78) 민윤숙, 위의 논문, 2010, 104쪽.

채제도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이건(李健)이 1628년에 기록한 『濟州風土記』에 미역을 채취하는 특정한 기간이 제시되어 있는 것과 바닷가에 남녀가 함께 작업하는 것에서 미역 해경(解警), 즉 채취가 허용되는 허채(許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그 미역을 캐낼 때에는 소위 잡녀가 발가벗은 알몸으로 해정(海丁)을 편만(遍滿)하며 낚을 들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 올리는데 남녀가 상잡(相雜) 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⁷⁹⁾

물론 조선시대에도 부분적이거나 금채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금채라는 것이 다가올 미래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일정기간의 금지기간을 두는 것이라면 이는 마을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도의 해안마을에서 금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해녀들의 회고를 통해 보자면 대부분 1970년대와 80년대라고 한다. 어촌계에서 해산물의 생태에 따라 금채와 입어금지 기간을 회의를 통해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⁸⁰⁾ 현재 엄격하게 금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전복이나 소라 같은 어패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흔했기 때문에 따로 금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었다는 점,⁸¹⁾ 그리고 예전에 엄격히 시행되던 미역의 금채는 반대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요즘에 와서는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어촌계에 의한 금채제도의 본격적 실시의 근거로 볼 수 있다.

해녀들이야말로 바다 속의 생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물질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어린 해산물의 무분별한 채취가 이듬해의 생산물 감소로 곧장 이어진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채에 대해서 대부분 수궁을 했고, 이것이 금채

79) 이건, 「제주풍토기」(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51-52쪽.).

80) 민윤숙, 앞의 논문, 2010, 108쪽.

81) 전복의 경우에는 현재 허채가 1980년대 이후 일시적으로나마 존재하던 금채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이는 워낙 전복의 수량이 드물어서 금채제도를 두는 실효성과 의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의 공동체적 제도화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촌계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개인들의 단기적 이익에 대한 욕구를 일정부분 제어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통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효율적 자원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해녀공동체가 앞장서서 필요성을 제기한 금채는 수산행정당국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맞물려 현재에도 다양한 수산자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8.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 구분 | 수산자원 | 학명 | 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
|--|------------|----------------------------------|---|
| 패류 | 소라 | Batillus cornutus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전복류 | Haliotis spp.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오분자기 | Sulculus diversicolor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해조류 | 감태 검둥감태 | Ecklonia cava Ecklonia kurome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그밖의 수산자원 | 넓미역 | Undariopsis peterseniana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 우뭇가사리 | Hizikia fusiformis |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 | 툇 | Hizikia fusiformis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그밖의 수산자원 | 해삼 | Stichopus japonicus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출처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개정 2019. 1. 22.> 제주도 해당 표만 재가공】 | | | |

바다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녀공동체의 자발적 생산통제의 효과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1990년대 초반에 있었다. 행정당국에 의해 제도가 이뤄지기 훨씬 전에 총허용어획량제도, 이른바 TAC(Total Allowable Catch)를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이다.⁸²⁾ 총허용어획량제도(TAC)는 1994년에 발효된 UN해양법협약에 의거해 인접 바다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 국가들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사항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수산행정당국에서도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녀를 중심으로 한 제주의 어촌 공동체에서 TAC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율적으로 어획량의 한계를 설정한 선례가 있는 것이다. 바로 소라와 관련해서였다.

소라는 1970년대 일본으로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육지에서의 양식성공으로 경제성이 약화된 미역을 대체하는 제주의 대표적 수산물로 대두되었다.⁸³⁾ 그런데 제주의 소라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급격한 어획량의 감소를 보인다. 물론 감소의 이유는 무분별한 남획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매년 3천5백톤 전후의 어획량을 기록하던 것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에 이르면 849톤으로 그리고 2년 후인 1989년도에는 5백톤을 밑도는 440톤의 어획량을 보인 것이다.

[표 9. 제주도 소라 연간(1986-1995) 어획량]⁸⁴⁾

(단위: 톤)

| 년도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어획량 | 1,400 | 849 | 548 | 440 | 605 | 904 | 999 | 1,443 | 2,643 | 2,768 |

82) TAC(Total Allowable Catch)는 ‘총허용어획량제도’로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83) 국립무형유산원, 『제주해녀문화』, 국립무형유산원, 2016, 127쪽.

84) 매년 발간되는 「농림수산통계연보」 참조, 1998년 농림수산부가 해양수산부로 바뀌면서 이후 자료는 「해양수산통계연보」 참조.

1987년 소라 어획량 급감의 직접적인 이유는 우선적으로 1986년 여름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한 마을어장 소라의 폐사에 기인한 것이었다.⁸⁵⁾ 하지만 해당시기에 소라는 일본에 수출되면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제주 해녀들을 비롯한 어로종사자들의 남획이 어획량 감소의 기본적인 이유로 당연히 지적될 수밖에 없다. 특히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수산자원보호령에 근거해 총 24척이 허가된 상태로 조업을 해오던 잠수기어선의 남획도 큰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역의 잠수기 어선은 소라가 주요 대상 어종이었고, 조업이 금지된 마을어장에서 불법어획을 하는 것이 공론화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어촌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힘입어 제주지역에서 조업하던 잠수기어선은 1991년에 제주도의 예산과 6개 수협이 협력하여 매수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인 허가연장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면서 1997년에는 공식적으로 제주해역에서 사라지게 된다.⁸⁶⁾

소라의 대량 폐사와 어획량 급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제주의 해녀들은 자발적으로 소라의 어획량 조절에 나서게 된다. 소라의 어획량 감소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1990년 11월 수협과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업인들과 행정당국이 모여서 소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회의를 통해 소라의 과잉생산에 따른 남획에 대해 우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을 기준으로 자율적인 TAC를 결정하게 된다. 소라의 TAC는 수협에서 어촌계로 이어지는 계통을 따를 것, 설정한 총어획량에 도달하면 수매를 하지 않을 것, 할당된 어획량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 법적으로 정해져있던 소라의 금채기간인 7월과 8월에 더해 9월까지로 1개월 연장할 것과 채포금지체장도 6cm에서 7cm로 상향조정할 것에 동의하였는데 이 또한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물론 행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는 공식적인 기구인 수협과 어촌계가 대표로 참여했으나 제주의

85) 당시 제주도 해양과학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1986년 여름의 폭우로 인해 육상의 오염물질이 연안에 유입되면서 소라의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60년사』, 제주특별자치도, 2006, 235쪽.).

86) 총 24척의 잠수기어선에 대해 진행된 매수사업은 일단 1991년에 총 21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3척의 잠수기어선이 매도를 거부했으므로 허가유효기간(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잠수기어선이 1997년 8월까지였다)까지 조업을 하도록 허용했으나 수산자원보호령이 제주도 행정당국의 요구에 따라 개정되면서 추가적인 허가연장이 불가능해져서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된 것이다.

어촌계가 해녀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된다는 점과 소라의 채취는 주로 해녀들이 마을어장에서 행하는 어로활동이기 때문에 제주 해녀들의 의사가 대거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TAC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9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마을어장의 공유자원 적정관리와 관련된 자발적인 제도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⁸⁷⁾ 마을어장에서 금채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던 해녀 공동체의 공유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자발적 생산조절에 힘입어 소라 TAC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채 안되는 1995년에는 이전의 어획량을 회복하게 된다.

제주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된 소라에 대한 TAC는 마을어장 관리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면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차원의 어종별 TAC의 도입, 확대가 우선적이겠지만 그와 더불어 자율관리어업제도의 도입도 제주 소라의 TAC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⁸⁸⁾ 자율관리어업제도는 199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⁸⁹⁾ UN해양법협약에 의한 TAC제도의 실시에 대비하자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었지만 그와 더불어 효율적인 수산 자원의 보호와 적정 생산에 의한 적정 어가의 유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⁹⁰⁾ 자율관리어업을 신청한 어촌계에는 남획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생산량 조절과 공동체성의 강화를 위한 공동 출하의 원칙을 지켜야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아울러 마을어장의 생태성 유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관리책임이 따르는데 이를 제대로 준수할 경우에는 시설 지원이나 종패방류 등에서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참여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으로 제주도 소라의 TAC의 경험에 힘입어 시행된 자율관리어업제도에 대한 제주도 어촌계의 참여도 2020년 기준으로 총 53개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제주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신청한 어촌계에 대한 지원의 상

87) 정부차원의 TAC제도 도입은 1995년 12월 30일 수산업법 개정과 1996년 12월 31일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이 있고 난 후 약 2년 후인 1998년 4월 25일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88) “자율관리 어업제도 정착 과제”, <부산일보>, 1997.10.10.,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71010000940>>(접속일: 2020.10.25.).

89) 김태기, 「어업인과 정부가 함께하는 자율관리어업」, 『어항어장』 69, 한국어촌어항협회, 2004, 36-40쪽.

90) 배타적경제수역(EEZ) 시행 및 1994년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전 세계 주요 연안국들은 TAC제도를 기본 축으로 하고 어장 및 조업시기 제한 등을 보조적 수단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혼합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당부분이 전복 등의 종패방류와 해녀탈의장의 개보수에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이 역시도 해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91)

한편 ‘갯닦기’라는 것은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툇과 같은 해조류의 포자가 바위에 잘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장청소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조류의 수확이 마무리되는 8월경에 해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해조류의 성장 초반기에는 환금성 해조류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수중잡초의 제거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알려진 바로는 갯닦기라는 것은 육지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고 제주도의 마을어장에서 실시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한다.⁹²⁾ 도입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갯닦기의 효용성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인데 해녀회에 따라서는 소속 해녀들에게 일종의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⁹³⁾ 제주해녀들 사이에서 갯닦기가 쉽게 마을어장의 황폐화를 막는 방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마을어장의 건강성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1967년도에 이미 제주연안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를 갯닦기 작업을 하지 않은 것과 연관지어서 어장청소를 독려하기도 했다.

해녀공동체 차원에서 마을어장의 효율적 관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관리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이는 해녀회를 통하기 보다는 어촌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마을단위의 공적조직은 어촌계이기 때문이다. 어촌계 규약(정관) 등에 의거하여 마을어장의 운영을 통해 확보된 이익에 대해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제주도 어촌계 상당수는 자체적인 규약에 의해서 마을어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구좌읍 김녕리 어촌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녕리의 경우에는 어촌계 자체 규약으로 김녕 앞바다를 8개 구역으로 나눠 윤번제로 우뭇가사리를 채

91)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해양수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20, 114쪽.

92) 1955년 추자어업조합에서 추자면 내의 각 기관이 협조하여 갯닦기 주간을 설정하고 19,000평에 달하는 연안 갯닦기를 실시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60년사』, 제주특별자치도, 2006, 288쪽~289쪽.).

93) 1965년 당시 해조류의 심한 흉작에도 불구하고 갯닦기 작업을 수행한 지귀도(남원면 위미리앞) 어장은 미역풍년을 거둔바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책, 2006, 289쪽.).

취한다. 어촌계가 우뭇가사리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매년 6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철저하게 공동 작업과 공동 분배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전체 수익 중 20% 정도는 고령 해녀 등 나이가 많은 어촌계원과 여러 이유로 채취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 계원에 골고루 나눠준다. 나머지 80%는 경비를 제외하고 작업에 참여한 이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어촌계의 형성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가 결국은 제주 해녀공동체에 있어서는 마을어장의 친환경적이면서 생태적인 특성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이익의 추구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령을 통해 주어진 마을어장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어촌계 소속 계원들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다. 마을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채’나 ‘갯담기’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익의 공동분배를 통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인 것이다. 공동체의 이익에 기반을 둔 이러한 제도의 존재로 인해 자율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마을어장의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해녀공동체와 마을어장의 지속가능한 관리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유자원의 존재가 일반적이었다. 마을공동체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던 마을숲, 마을어장, 마을공동목장, 공동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을숲과 같은 공유지가 존재함으로써 해서 난방과 생필품 제작을 위한 목재의 확보도 가능했고, 흉작이 발생한 경우에는 야생식물의 채취를 통해 구황 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근대화과 더불어 전근대사회의 특징적 요소인 ‘공유자원’은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영국에서 발생한 ‘인클로저 운동’이 대표적이다.⁹⁴⁾ 공

94) ‘인클로저 운동’의 인클로저는 ‘울타리치기’로 번역된다. 영국에서 16세기에 시작해 19세기 까지 이어진 공유지의 목축지화, 농경지화를 말한다. 영주의 장원에 소속되어있던 소작농들은 거주지 인근의 산림과 초지, 혹은 휴경지를 공유재처럼 여겨 가축의 방목이나 벌목, 채취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주들이 점차 개인소유를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자유로운 사용이 금지되었고, 소작농들은 거주지를 떠나 도시의 임금노동자로 변화하게 된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목축 생산성과 농업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이는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동반한 것이었다.

유자원에 대해 개인소유가 일반화되면서 그것이 갖는 공동체 결속유지와 비상상황에 대한 완충요소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게 된다. 물론 소유권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생겨난 결과는 공유자원, 특히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농업 생산성의 증대였다. 이는 공유자원의 성격에 내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모색하지 않은 공유자원은 낮은 생산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공유자원의 특성상 공동체의 엄격한 내부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황무지와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이다.

1968년 미국의 생물학자 개럿 하딘(Garrett Hardin)이 주장한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이론의 핵심은 사용권한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자원은 무한정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에 사용을 맡기는 경우에 남용으로 이어져서 쉽게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각자의 합리적 선택이 공동체 전체로 보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인간의 이기심은 적당한 제어가 없는 경우에 무한정의 이익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제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방법 혹은 국가와 같은 상부기관이 소유하는 방법으로 계획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면 공공재의 훼손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화산섬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한반도 본토에 비해서 비교적 풍부한 공유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마을주변에 있는 곳자왈 숲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목재를 구할 수 있었고,⁹⁵⁾ 중산간 지대와 오름을 중심으로 방목을 통한 목축을 했으며 또한 섬이라는 조건에 의해 마을어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해녀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어장과 달리 곳자왈 숲과 마을공동목장의 경우에는 공유자원으로써의 성격을 산업화 이후에 상실해 가게 된다. 곳자왈 숲의 경우에는 농경에 적합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산림에 대한 별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변화를 거치면서 사실상 공유자원으로써의 용도를 잃게 되고 따라서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개발과정에서 골프장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95) 곳자왈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합성어로 여겨진다. 숲을 뜻하는 제주어 ‘곳’과 가시 덩굴을 뜻하는 ‘자왈’을 합쳐 만든 글자로 화산이 분출하면서 형성된 용암지대를 말한다. 토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간후에 농경에 사용하기도 용이하지 않아 비교적 최근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무, 덩굴식물 등이 원시림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는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인정받고 있다.

경우가 많았다.

근대이전의 제주사회가 농경을 기본적인 생산활동으로 삼는 사회였고 이와 병행하여 목축활동과 어로활동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보면 해녀들의 마을어장과 마을주민 다수가 공유하는 공동목장은 근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유사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녀들의 마을어장과는 달리 마을목장의 경우에는 목초지의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경관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더불어 점차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마을공동목장의 경우에는 개발의 과정에서 상당수가 매각과정을 통해 사라지게 된다. 제주의 중산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골프장, 중국자본이 건설한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타운과 같은 대단지 숙박시설 등은 이전에 대다수가 마을공동목장 부지였다.⁹⁶⁾ 대부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목장을 매각함으로써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마을공동목장은 해방 이후 계속 감소해왔는데 1943년 기준 123개에서 2018년 기준 51개, 2019년 기준 44개(제주시 33, 서귀포시11)로 집계되고 있다.⁹⁷⁾ 2018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1년 사이에 무려 7개가 감소한 것을 보아 마을공동목장은 소멸속도가 매우 급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녀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마을어장의 경우 소유권이 아닌 어업권의 형태이고 비교적 짧은 최대 20년의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마을목장의 경우에는 비록 공동의 명목이기는 하지만 소유권이 부여되어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지는 것은 보유로 인한 이익보다는 매각에 따른 수익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사회에 개발열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2010년대 초반부터 공동소유인 마을목장의 매각은 어찌보면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공동목장 매각을 통한 조합원의 기대 수입이 높아지고, 이것이 높아질수록 조합원들의 매각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토지거래 시세를 근거로 산정한 조합원 당 배당액을 매각을

96) 신화역사공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원으로 중산간지역에 위치하며 JDC 사업이다.

97)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마을공동목장 현황.

통한 기대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세가 높아지면 매각 의지가 높아지는 것이다.⁹⁸⁾

문제는 이렇게 매각된 목장부지들이 대규모 개발이 되면서 자연경관이 훼손됨과 동시에 환경파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최근 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ha로 약 323만평에 달”하며,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 및 목장용지 매각은 마을 공동체의 존립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 환경, 문화적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⁹⁹⁾

하지만 마을목장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을목장이라는 것이 유용성이 거의 없고, 단독으로 처분할 수도 없는 재산권 행사가 극히 제한된 유명무실한 재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을목장을 소유한 공동체가 직접 말이나 소를 방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목장을 임대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게 보통인데 이마저도 그 수익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각의 기회가 나타난다면 한번에 처분해서 나누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공동목장의 해체, 매각에 따른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일시에 매각대금의 지급이 가능한 대자본에게 이전되어 사유화되면서 수익성 추구에 따른 난개발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는 점이다. 중산간의 난개발로 인한 저지대의 식수부족과 오염문제가 수시로 제기되는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공유지가 사적소유에 의해 분할되는 상황은 개별소유자 개개인의 처분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동체의 결속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매와 임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뿐 공유지를 바탕으로 공동소유자들 간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98) 안경아 외, 『마을 공동목장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제주연구원, 2018, 149쪽.

99) “개발사업자 매입 대상 마을공동목장..경관훼손.환경파괴 직결”, <제주환경일보>, 2019.10.15.,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173>>(접속일: 2020.10.31.).

공유자원이 실질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치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산출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마을목장과 마을어장은 서로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농업에 우마를 동원하는 영농방식이 기계로 대체되고, 축산업 자체가 고정된 축사 공간에서 사료로 이용해 키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마을목장의 필요성 자체가 약화되었다. 아울러 이전에 중요시되던 마을목장의 생태지리적 특성에 대한 지식자체도 더불어 소멸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¹⁰⁰⁾

하지만 마을어장의 경우에는 마을목장과 달리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과 더불어 물질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이 산출됨으로 인해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공동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마을어장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 해녀공동체에서는 그러한 것이 ‘생태적 지식’의 차원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녀의 물질은 일년 내내, 한달 내내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영등철이라고 해서 바다의 수온이 크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한두달 남짓 물질을 쉰다. 또한 물때를 보아가면서 한달에 15일 정도 물질을 하는데 그마저도 바람이나 파도가 거셀 때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때에 따라 물질을 하는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무날부터 이 해녀들 물에 들어도, 서무날부터 하면 이제 초여드레가 조금, 아흐레, 열흘, 열하루부터는 물질을 시작하는 거야. 서무날부터, 열하룻날부터. 그게 서물, 그때부터 물질 시작하는 거¹⁰¹⁾

해녀들의 물질은 물때라고 하는 조석간만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바다에 대한 생태적 지식이 있어야 물질작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실제 해녀와 대화를 하다보면 보말의 경우도 메홍이, 수두리, 먹보말 등으로 세분되고 모자반의 경우에도

100) 마을목장이 주로 위치한 제주의 중산간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방목을 위해서는 소와 말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연못등의 위치를 잘 알아야하고, 아울러 방목을 하는 과정에서 초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다

101)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25.남원을 태흥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9, 219쪽.

생태적 습성과 모양에 따라 달리 구분하는 것, 물 위에서는 안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바위와 골짜기가 만들어내는 물길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어느 '여(磯)'로 물에 들어가야 하는지 등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해당 지역만의 실제적인 생태지식을 들을 수 있다. 자신들의 마을어장에 대해 생태지식의 차원에서 이전 세대 해녀의 경험은 후배 해녀에게로 이어진다. 매년 변해가는 바다의 생산성에 대해 개별 해녀들은 경험적으로 어느 해의 과도한 생산량이 이듬해에 현저히 줄어드는 수확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러한 지식이 축적되면 마을어장이 감당할 수 있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한계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현실에 반영될 때에는 해녀공동체가 마을어장에 대한 구체적 생태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물질작업의 규모를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생태계의 취약성이 발견되는 마을어장의 경우 잠정적으로 물질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녀의 생태적 지식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물질작업을 통해 후대로 전승된다. 바다에 대한 생태적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다속에서 채취 대상이 되는 수산물의 생태적 변화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특정 수산물의 채취를 일정 시기가 될 때까지 공동체 차원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금채기의 설정도 이러한 생태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미역의 금채기 설정은 대강의 날짜가 미리 예고되어있기도 하지만 생육상태를 관찰한 다음에 정확하게 해경이 이뤄지는 시기를 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이많은 해녀들에게 금채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면 상당부분 미역과 관련되어 있다. 미역과 같은 해조류의 경우에는 금채기로 설정한 시기 이전에 채취해도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생육이 왕성하게 진행되어 최고의 수확을 올리기 전에 누군가가 어린 해조류를 무한정 채취한다면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공동체 전체로는 수확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금채기 설정의 이유로 작용한다.

미역의 금채기 설정은 육지에서 양식미역이 보편화된 뒤로는 제주 해녀공동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해녀 스스로 환금성이 없는 미역을 반찬거리 정도로 채취하는 마당에 금채기를 설정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대신 일본으로 수출길이 열리면서 환금성이 대두된 소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새롭게 금채의 대상이 되기

도 했다. 지금도 소라는 산란기와 더불어 성장이 왕성한 시기에는 금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주어진 조건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물질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즉 고무옷이나 물안경의 도입에 대해 해녀들이 공동체적인 통제를 가했던 것 역시도 마을어장이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지금도 우뚝가사리 수확이나 소라 채취시기에 바다에 가보면 어촌계장 등의 일사불란한 지휘로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누구는 물질 능력에 따라 몇 시간을 더 할 수는 있겠으나 해녀공동체 차원에서 개개인의 무제한적인 채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적 제한은 개인의 이기심을 견제하는 단순한 평등주의적 역학만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따라 개인의 능력주의도 발휘할 여지가 생긴다. 제주 해녀의 공동체적인 제한은 생태 복원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생산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바다 생태계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을 해녀들은 물질을 통한 경험과 윗세대로부터의 전승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주의 해녀공동체가 늘 생태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 해녀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마을목장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마을어장에 대해 제주 해녀공동체가 가지는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상황의 전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술한 상처를 남긴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강정동 해녀회가 그러했다. 2007년 4월 26일에 개최된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강정마을 해녀들은 해군기지 유치신청안의 갑작스런 상정과 통과과정에서 추진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¹⁰²⁾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또다른 주민들이 6월 19일에 새롭게 소집한 임시총회에서는 찬성측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해 투표 자체를 무산시킨 <투표함 탈취사건>을 일으킨 적도 있다. 강정마을에 앞서 후보지로 제시되었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와

102) 2007년 4월23일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열린다는 공고가 강정마을에 게시됐다. 4월 26일 주민 1,500여 명 중 87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해군기지 유치가 투표가 아닌 박수로 결정됐다. 5월 14일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지를 확정 발표했고, 투표무산과정을 거쳐 2007년 8월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강정마을 주민 72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80명이 해군기지 유치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됐고 추진과정에서 강정마을은 물론 제주도 전체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등에서는 해당지역 해녀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극력 반대한 바 있다. 반면 강정마을의 해녀들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해군기지 추진당국에서 해녀들을 만나 보상금으로 회유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시되기도 했다.¹⁰³⁾

그러나 강정마을과 인접한 다른 마을 해녀들은 강정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와 달리 행동했다. 150명에 이르는 이웃마을 법환 해녀들은 각종 시위에 참가하는 등 치열한 반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정마을 앞바다는 바로 법환마을의 마을 어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과 그 이후의 활동과정에서 피해 발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참여했던 당시 법환마을 해녀회장의 말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해녀들이 강정마을 해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제주의 바다에 대해 제주의 해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강정마을 해녀 한 사람이 '내 바다 내가 팔아먹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나'고 따질 때였어요. 이 바다가 어떻게 내 바다고 누구 바다입니까. 힘없는 사람도 함께 벌어먹고 살다가 잘 지켜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바다예요.

세상 어느 해녀가 그런 바다를 앞장서서 팔아넘긴다는 말입니까. 바다를 포기한다는 것은 해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예요. 해녀가 바다에 애착이 얼마나 심한데... 해녀가 바다를 버린다는 것은 지 목숨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다를 판 해녀는 해녀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귀중하다고 영원히 바다를 버린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됩니다. 보통 물질하는 사람도 1, 2년이면 정부가 준 보상금 정도는 버는 데 왜 굳이 바다를 팔면서까지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¹⁰⁴⁾

103) “평화 잃은 4년...강정마을은 지금 폭풍전야”, <한겨레신문>, 2011.7.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9134.html>(검색일: 2020.10.3.).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2009년 1월 21일 해군기지 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어촌계에 해녀보상금 68억원과 정치망어선 9억7000만원 등 약 78억여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계좌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기지 어업보상금 78억원 강정어촌계에 지급”, <미디어제주>, 2009.1.28.,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72>>(검색일: 2020.10.3.).

104) ‘바다 팔아먹은 해녀...용서가 안 됩니다’, <오마이뉴스>, 2011.8.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9413>(검색일: 2020.11.3.).

현재 강정의 해녀들 대다수는 2007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2007년 강정해녀들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제주의 해녀들이 개발문제에 대해 갖게 되는 입장과는 매우 달랐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의 해녀공동체가 마을어장이라는 바다의 경계를 중심으로 제주바다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해녀공동체의 선택이 반드시 생태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같은 해녀로서 강정의 해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환리 해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의 해녀공동체가 보유한 마을어장은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또한 마을어장에 주어진 어업권이라는 것이 비록 주기적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녀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공동체적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만약에 해녀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해녀의 자격이 주어진다거나, 마을어장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바다에서든 무제한적으로 물질이 허용된다거나, 혹은 시기와 상관없이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채취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 제주 연안바다라고 하는 공유자원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 해녀공동체는 마을어장의 경계를 따라 자신들의 공유재산 경계가 명확하고 그 경계 내에서 산출가능한 생태적 잠재력을 알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이기심을 제어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이기심의 제어는 결국 바다 생태계의 보존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지속적인 물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해녀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 공동자원 관리의 다양한 사례 관찰을 통해 개인에 의한 사유화는 물론이고 국가와 정부의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¹⁰⁵⁾ 특정 사회 혹은 공동체 내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공유자원들의 특성들을 관찰하면서 오스트롬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관리제도의 디자인 원리를 정리한 바 있다. 그것은 ① 공유자원과 사용권을 가진 주체 사이의 명확한 경계, ② 자원의 사용 및 사용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③ 규칙의 도입과 변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집합적 선택장치, ④ 공유자원의 사용에 대한 적극적 감시 활동, ⑤ 위반의 정도에 따른 점증적 제재 조치, ⑥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저비용 갈등 해결 장치, ⑦ 외부의 권위체에 의해 간섭받지 않을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⑧ 그리고 사용, 감시, 운영 등에 있어서의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의 존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⁰⁵⁾ 이러한 원리들이 충실히 실행가능하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구 학자인 오스트롬이 제시한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디자인 원리가 제주의 해녀공동체에 특이할 정도로 부합한다는 것은 제주해녀의 공유자원인 마을어장 관리가 그만큼 모범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보다 알기 쉽게 제주해녀공동체의 마을어장 관리와 오스트롬의 자원관리 디자인원리를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제주 해녀공동체의 자원관리 양상]

| | 오스트롬의 자원관리 디자인원리 | 제주 해녀공동체의 자원관리 양상 |
|---|---------------------|--|
| 1 | 자원과 주체의 명확한 경계 | - 마을어장의 배타적 이용권 - 여성(딸/며느리)으로 이용권리 승계 |
| 2 | 자원 사용규칙의 현지부합성 | - 채취물에 따른 공동작업의 설정 - 마을어장특성에 따른 금채기 설정 |
| 3 | 규칙에 대한 집합적 선택장치 | - 해녀회(잠수회)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 불턱(탈의장)시설에서 상시적 의사소통 |
| 4 | 공유자원 사용이 적극적 감시 | - 단독입어 금지의 불문을 유지 - 금채기 위반에 대한 상호감시 - 불법어로(스쿠버)에 대한 감시 |

105)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리아, 2010.

106) 엘리너 오스트롬, 위의 책, 2010, 173-193쪽.

| | | |
|---|-----------------|---|
| 5 | 위반의 정도에 따른 제재조치 | - 금채기 위반에 대한 내부 과징금부여 - 개인별 판매에 대한 과징금부여 |
| 6 | 이해조정외의 갈등해결장치 | - 해녀회(잠수회) 결정을 통한 갈등해결 |
| 7 |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 - 해녀회(잠수회)의 자결성 확보 |
| 8 |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 | - 수협, 어촌계의 지도, 감독과 협업 |

오스트롬의 디자인 원리의 첫 번째인 공유자원의 명확한 경계의 경우에는 마을 어장에 대해 어촌계와 해녀회가 가지는 어업권에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어업권은 근대에 들어와 법률의 형식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배타적인 어업관행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최근의 양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두 번째 사용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은 한정된 마을어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해녀회가 주도적으로 이행하는 ‘금채’와 ‘갯다이’로 연결가능하다. 세 번째 집합적 선택장치의 경우에는 해녀공동체가 어촌계별로 혹은 마을별로 구성한 해녀회가 해당되는데 이를 통해서 조업의 시기와 수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도 무리없이 제주 해녀공동체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 해녀공동체는 1인 1표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민주성과 어촌계 및 마을회와 별도로 의사결정이 존중받는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해녀회를 운영한다. 또한 외부인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해녀공동체 내부의 규칙위반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 감시활동과 이에 따른 점증적 제재 조치도 실행하고 있다. 한편 제재의 과정에서도 공동체 유지를 우선에 둬으로써 저비용의 갈등 해결 장치를 가동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오스트롬이 제시한 원리들에는 비용과 편익으로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경제학적 측면이 분명한 한계로 존재한다. 위에 제시된 원리들이 제주 해녀공동체에 적용되기에 충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아야할 요소 또한 있다. 해녀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이지만 서구의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여겨져서 배제되었을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주의 해녀공동체가 근대 이전부터 유지해온 영등굿, 잠수굿과 같은 무속의례는 공동체 결속에

미치는 영향이 크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롬이 제시한 원리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역사성을 갖고 현재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는 공동체에는 자신들이 처해있는 환경적 조건에서 만나게 되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일정 정도 신앙 혹은 경배의 대상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제주 해녀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영등굿과 잠수굿 등의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전근대적인 미신으로써가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해녀들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제주의 해녀공동체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지역공동체인 것이 분명하지만 물질이라는 작업을 함께하는 직업공동체의 특성과 더불어 영등굿이나 잠수굿과 같은 신앙체계를 공유하는 신앙공동체의 측면도 일부나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녀공동체의 가장 큰 특성은 구성원들이 마을의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여성공동체라는 점이다. 물질작업을 할 때는 연장자나 상군해녀를 중심으로 나름의 위계가 존재하지만 마을로 돌아가면 언니, 동생으로 지내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경조사는 물론이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관습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또한 해녀공동체는 상호간의 연대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 역시 강하다. 지금은 쉽게 보기 힘들지만 해녀사회에는 ‘계석’이라고 불리는 암묵적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계석은 많이 잡은 해녀가 수확물이 적은 해녀나 실력이 부족한 해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¹⁰⁷⁾ 해녀공동체에는 몸이 아파서 물질에 참여하지 못하는 해녀에게 수확물의 일부를 나눠주는 전통도 있었다. 계석에는 물질 능력이 뛰어나서 수확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같은 해녀공동체의 동료나 선후배가 빈손으로 귀가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산량이 타인들의 것과 매우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제주 해녀의 경험을 통해 보면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07) “과거에는 초보자들의 의지를 북돋워 주기 위해 물속에서 상군 해녀들은 자신이 채취한 물건을 물속에서 망사리에 넣어 남모르게 건네주고 일정한 작업량을 채워 주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서 해녀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특수어로 ‘계석’이라고 했다(좌혜경, 『제주 해녀』, 대원사, 2015, 55쪽.).

여성으로 구성된 해녀공동체가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위계가 강조되는 남성들의 경우와는 달리 평등이 강조되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불턱 민주주의’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불턱에서 이루어지는 해녀들의 대화문화는 상명하복이 아닌 설득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¹⁰⁸⁾ 간혹 해녀탈의장에서 보면 해녀들이 큰 소리로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질작업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는 기본적인 사항 말고도 동네 대소사에 대한 균등한 참여, 마을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호간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해녀들의 나이, 경험, 기술을 존중하면서도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위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익이 창출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재산, 즉 마을어장이 존재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부터 아래로의 강압이 아닌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설득과 타협으로 이뤄내면서 상군해녀가 중군해녀, 하군해녀를 보듬는 호혜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녀공동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출판되어 꽤 호응을 얻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라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인도 북부의 라다크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현지인들의 가난하지만 행복이 유지되는 넉넉한 삶의 태도에 매료된다. 하지만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초창기 라다크가 가진 모습이 차츰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창하게 된 것이 이른바 ‘반개발(反開發, counter-development)’이다. 반개발은 무작정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반개발의 핵심 목표는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지켜가는 가운데 자급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면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켜가며 지역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점에서 제주 해녀공동체가 보여주는 자발적 통제를 통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추구는 헬레나 노르베라 호지가 주창하는 반개발과

108) 불턱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며 작업 중 휴식하는 장소이다. 둥글게 돌담을 에워싼 형태로 가운데 불을 피워 몸을 덥혔다. 이곳에서 물질에 대한 지식, 물질 요령, 바다밭의 위치 파악 등 물질 작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전수하고 습득하며 해녀 간 상호 협조를 재확인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 해안에는 마을마다 3~4개씩의 불턱이 있었으며 현재도 70여 개의 불턱이 남아있다. 1985년을 전후하여 해녀보호 차원에서 마을마다 현대식 탈의장을 설치하여 불턱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해녀박물관 해녀소개 발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생태주의에 근거한 반개발의 논리를 제주의 해녀들이 의식한 적은 없으나 실천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온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야말로 ‘오래된 미래’의 충실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제주도 곳곳에서 난개발로 벌어지는 많은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 결론

급속히 진행된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제주 해녀들 역시 가족내의 역할부터 사회적 지위까지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근대 이전의 해녀가 봉건적인 예속에 강하게 묶여서 수탈을 강요당한 집단이라면 근대 이후의 해녀는 자본주의적 화폐경제의 효과를 체감한 사람들이다. 물질을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으로 기본적인 생계는 물론이고 밭을 사서 재산을 늘리고, 자녀를 교육시킴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적극적인 신분상승을 추구했다. 해녀의 숫자가 늘어나고 제주도 바다의 황폐화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자, 출가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먼 타지의 바다에서 고된 노동을 감내했을 정도이다.

제주의 해녀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주의 해녀들에게는 근대 이전부터 형성되어 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정신 등이 존재했기에 이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해녀공동체의 특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방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적 변동과 법적·제도적 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녀공동체의 특성이 역사적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역사적 형성물이기 때문에 해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들어 해녀들의 물질을 생태주의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해녀들 개개인은 물론 해녀공동체 자체가 생태주의에 입각한 것은 분

명 아니다. 해녀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주 바다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무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자영업자에 가까운 측면 또한 갖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생태주의에는 일정정도 내재된 도덕률에 입각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실천과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녀들은 환경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생태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녀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의 타당성에 대해 적극 수긍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을어장이라는 공유자원을 활용해 왔다.

해녀의 존재가 제주바다 생태계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계량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정정도의 상상력을 갖고 ‘해녀 없는 제주바다’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의 일부나마 알 수 있을 듯하다. 만약 제주 해녀공동체가 해체를 거쳐 해녀 구성원의 숫자가 1~2명으로 극히 적어진 상황을 가정한다면 아마 제주해녀들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물질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해녀들은 스킨 스쿠버 장비, 심지어 잠수기를 도입해서 물질에 사용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에 해녀와 그들의 공동체가 사라진다면 제주의 어촌계는 육지의 경우처럼 ‘빈매’를 선택하게 될 지도 모른다.

지금의 제주해녀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공동체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로 삼아 물질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과도한 이익 추구 욕구를 제어하고 다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지의 마을어장에서 해녀와 같은 전문 인력의 부족과 어장황폐화의 가속화로 인해서 ‘빈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주의 바다생태계에서 제주해녀가 차지하는 특수한 역할을 잘 알 수 있다.

유네스코가 제주 해녀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밝힌 이유에 해녀문화의 핵심가치가 잘 정리되어 있다. 결속력과 유대감이 높은 공동체의 존재,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시켜주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의 유지, 공동체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공유자원의 활용이 그것이다.

해녀들은 저마다의 물질 능력에 따라 하군, 중군, 상군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며 상군 해녀들이 나머지 해녀들을 지도한다. 잠수를 앞두고 제주 해녀들은 무당을 불러 바다의 여신인 용왕할머니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잠수굿을 지낸다. 관련된 지식은 가정, 학교, 해당 지역의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 해녀회, 해녀학교와 해녀박물관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로 전승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에 의해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정신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지정된 ‘제주 해녀 문화’는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고, 생태 친화적인 어로 활동과 공동체에 의한 어업 관리는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었다.¹⁰⁹⁾

해녀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로 존재할 때 의미를 갖는 “해녀들”이다. 해녀공동체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물질의 수익성이 존재하기에 고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양적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하다. 만약에 해녀의 물질이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해녀공동체는 급속한 몰락을 거쳐 존재 자체를 위협받을 것이다. 이웃 마을의 바다와 우리 마을의 바다를 구분짓는 마을어장의 경계가 존재하기에 바다에 대한 애착을 토대로 가꾸어갈 수 있다. 해녀들에게 마을어장이라는 공간의 한정이 없다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이 제주의 해안마을에서도 무수히 발생할 것이다. 수평적 관계가 중시되는 해녀들의 공동체가 있어서 수시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조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다. 해녀공동체의 내부적 제어가 없다면 물질기술이 뛰어난 해녀들의 욕구에 따라 제주바다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제주 해녀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양상들의 상당 부분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것은 아니다. 일제의 수탈로 인한 어장 황폐화, 이로 인한 외부로의 출가물질, 지속적인 자본주의 화폐경제로의 편입과 환금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 등은 분명 근대에 벌어진 사건들이고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물질을 하나의 산업의 양상으로까지 키워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해녀들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주어진 조건아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물질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유지시켜왔고, 제주바다의 생태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해방 이후에 제주를 벗어난 물질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해녀들은 자신의 근

10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heritage.unesco.or.kr>).

거지가 되는 마을어장, 마을 앞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치 육지에 있는 발처럼 소중히 가꿔나갔다. 공동체의 단합은 무한정한 수중 자원의 채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체 스스로 엄격한 제한을 설정하고 지켜나갔다. 분명 해녀들이 정합적인 논리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그러한 결정들을 내린 것은 아닐 것이다. 공동체를 통해 각자의 이기심을 적절히 제어하고, 인간과 바다가 결코 일방적인 수탈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라는 생태지식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결정을 내리고 해녀들 각자가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갈등상황이 존재해도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 유지하는 방식으로 또한 바다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나간 것이다.

외부에서 변화의 계기가 주어지는 때 시기마다 해녀집단의 선택은 생태지향적이면서도 공동체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아졌다. 그것은 바다를 지킨다는 대단한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익확보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명분보다 다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선택이기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앞으로 제주해녀의 미래 역시 다양한 변화의 양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대응방식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한다면 제주해녀 집단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제주바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모두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에 기반한 개발주의는 환경파괴와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진행된 근대적 산업화는 결국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기후변화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제어되지 않는 욕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다. 제주 해녀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면서 자연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스스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나무가 많은 숲에서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많은 산소는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의 작은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산소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다. 바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될 이유이며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태적 인식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성’ 자체가 화두가 된 이 시기에 제주 해녀들이 공동체적 결속력을 토대로 유지해 온 물질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말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資料

『속음청사』, 『제주도세요람』, 『정헌영해처감록』
『제주신보』, 『제주신문』, 『조선일보』
『미디어제주』, 『헤드라인 제주』, 『연합뉴스』, 『제주대미디어JUMP』, 『제주환경일보』

2. 編纂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사료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1911)』,
제주발전연구원, 2010.

3. 單行本

고광민, 『제주 생활사』, 한그루, 2016.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김유정, 『제주 해양 문화 읽기』, 가람과피, 2017.
농림수산식품부, 『연안어업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
부, 2010.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창비, 2020.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한국 잠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 역락, 2019.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리아, 2010.
요하임 라트카우, 『자연과 권력』, 사이언스북스, 2012
이성훈, 『해녀 연구총서.3 역사학』, 학교방, 2014.
이지치 노리코, 『日本人學者가 본 제주인의 삶』, 경인문화사, 2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60년사:1946~2006』, 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해양수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20.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의 이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2018.
-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11.조천읍 함덕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9.
-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25.남원읍 태흥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9.
-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26.한경면 신창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9.
-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27.한림읍 옹포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9.
-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제주어구술자료집.28.애월읍 구엄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9.
- 좌혜경, 『제주 해녀』, 대원사, 2015.
-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진관훈, 『오달진 근대제주: 신문기사로 본 근대 제주 경제와 사회』, 학고방, 2019.
- 최재천 외,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2020.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중앙북스, 2007.
- 金贊汀, 『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 岩波書店, 1985.

4. 學術論文

- 고창훈, 「제주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계승」,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05-01, 대한토목학회, 2005.
- 강경민,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학연구』 22, 제주학연구센터,
2015.
- 강경민 · 민기, 「공유자원 경계 분쟁해결 사례연구-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사례
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5권,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 강대원, 「(제주여성과 역사) 강인한 해녀항일운동」, 『북제주 여성21』 제2호, 북제
주군, 2001.

- 강동식 외, 「일제강점기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발전연구』 8, 제주발전연구원, 2009.
- 강만생,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 연구회, 1986.
- 강정식, 「당곳의 세시의례적 성격」,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 김경돈·류석진,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순차적 해소를 통한 공유의 비극의 자치적 해결방안 모색: 제주도 동일리 해녀의 자치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3호,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1.
- 김경동, 「동아시아 근대화와 자본주의 형성 및 전개: 대안적 이론에 의한 해석」, 『아시아리뷰』 5(2), 아시아연구소, 2016.
- 김나영, 「조선후기 호적자료를 통해본 포작의 사회적 지위」, 『역사민속학』 29집, 역사민속학회, 2009.
- 김동현, 「제주 해녀 표상의 사적(史的) 변천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6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 김수희, 「일제시대 제주해녀의 해조류 채취와 입어」, 『제주해녀,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 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2006.
- ,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제주 잠수어민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3호,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김태기, 「어업인과 정부가 함께하는 자율관리어업」, 『어항어장』 69, 한국어촌어항 협회, 2004.
- 민경임, 「한국해녀의 역사 및 생활실태」, 『이대사원』 Vol.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64.
- 민윤숙, 「제주 잠수 물질의 생태학적 측면: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물질’ 민속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 , 「제주 해녀와 오토바이」, 『역사민속학』 35, 역사민속학회, 2011.
- , 「제주 잠수공동체의 공생, 공존 전략」, 『한국민속학』 55, 한국민속학회, 2012.
- 박찬식,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 16, 탐라문화연구소, 1996.
- ,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 배병일, 「여성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제주도 해녀의 입어관행과 법률과의 충돌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토지법학』 35(2), 한국토지법학회, 2019.
- 백영경,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연구』,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양경숙, 『제주해녀의 직업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2019.
- 이유진, 「탐라의 대일교섭-『日本書紀』의 교류기록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58호, 탐라문화연구소, 2018.
- 좌혜경, 「일본 쓰가지마의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 좌혜경 · 권미진,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 연구』 32, 제주도연구회, 2009.
- 장훈교, 「제주탐동 공유수면 매립반대운동: 유산의 재구성과 또 다른 상속의 방법」, 『탐라문화』 0(60), 탐라문화연구원, 2019.
- 진관훈, 「일제 강점기 신문기사로 본 제주 해녀 연구」, 『제주도연구』 52(0), 제주학회, 2019.
-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잠수」,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 포럼』 제10호, 제주발전연구원, 2004.
- 한면희, 「현실 녹색정책의 이념과 생태주의 사상」, 『동서사상』 제 8집,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0년.

5. 인터넷 사이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제주해녀박물관 (<http://www.jeju.go.kr/haenyeo>)
-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heritage.unesco.or.kr>)